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자치현안 정책 포커스 - 2024 - 제6호

자치현안 정책 포커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2024-06

자치현안 정책 포커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목차

Ⅰ.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1.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 1

–[참고] 지방의원 후원회 설립절차 ····· 9

Ⅱ. 정부부처 주요 정책동향

1.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과기·기재부) ····· 17

2.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관계부처 합동) ····· 19

3.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력(산업통상자원부) ····· 33

4.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농림축산식품부) ····· 43

5. 지방공사 타법인 출자한도 확대(행정안전부) ····· 51

6. 학교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안)(교육부) ····· 54

Ⅲ. 지자체 추진사업 사례

1.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장학생 지원사업(충청북도) ····· 63

2.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서울특별시) ····· 66

3.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전라남도) ····· 70

4. 여성 1인 사업장, 안심 비상벨 사업 시행(제주특별자치도) ····· 75

5. 경로당 어르신 점심 지원 확대(주 3일→5일)(서울특별시) ····· 78

목차

Ⅳ. 주요 연구기관 발표 자료

1. 초고령사회 노인 대상 식사 지원 현황 및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83

2.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지역별 B/C기준 차등화 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87

3. 온누리상품권 사업의 효과와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93

4. 포털뉴스 시대, 지역신문 활성화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 96

5. 인공지능과 일자리의 미래 (국회도서관) ····· 99

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 분석 사례

1.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의 개선사항(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107

2. 청년인턴 운영사업 사업계획 보완 필요(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10

3.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의 기후대응기금을 통한 에어컨 설치 지원의 적절성 검토 필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115

Ⅰ.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Ⅰ.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1.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 주요내용 요약

2024년 2월「정치자금법」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가 올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 2022년 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정치자금법 관련 조항에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림에 따라, 기존에는 국회의원만 상시적으로 후원금 모집 및 후원회 운영이 가능했으나, 올해 7월부터 선거 때가 아니여도, **상시적으로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 설치와 운영이 가능**하게 됨

지방의회(광역·기초의원) 후원회는 2022년 제8회 동시지방선거부터 처음 도입되었는데, 지방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모금이 가능하였음 ※ '22년 광역의원 후보자 후원회 모금한도(평균 약 2,700만원)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원 상시 후원회 모금한도는 광역의원은 연간 5천만원, 기초의원은 연간 3천만원**이며,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지역구 후보로 등록 시 상시 모금 한도의 최대 2배까지 후원금 모금**이 가능함(광역: 1억원, 기초: 6천만원)

국회의원 후원회 운영과 비교 시, 모금한도(국회의원: 연간 1억 5천만원)와 지원인력(국회의원: 별정직 공무원 8명, 인턴 1명 지원/ 지방의회의원: 정책지원 인력지원 *임기제공무원으로 의회사무처 소속)에서 차이가 있음. 국회의원 후원회의 경우 전담 직원이 후원업무를 담당하나, **지방의원 후원회**의 경우 의원이 **직접 후원회·정치자금 회계실무를 관리하거나 별도로 후원회 유급사원을 채용**해야 함. 후원회를 개설하는 지방의원들의 정치자금 회계처리 실무와 후원회 운영에 따른 **행정처리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그러나, 후원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시민들과 활발히 연결하고 의정활동에 수반되는 비용들을 정치자금으로 활용함으로써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홍보를 강화**할 수 있음. 또한, **관심 정책 분야 연구, 공청회 등 입법활동 비용으로 활용하거나 의정보고서 제작, 의정문자 발송** 등 그동안 개인적으로 지출했던 비용들을 정치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추후 선거비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함. 장기적으로 후원금 모금과 집행에 있어 투명성을 더하고 정기 회계보고를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더욱 신뢰를 쌓을 수 있음

지방의회의원후원회 설립 및 정치자금 회계실무 안내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후원회 및 정치자금 운영 실무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립과 운영 시 유의사항들을 소개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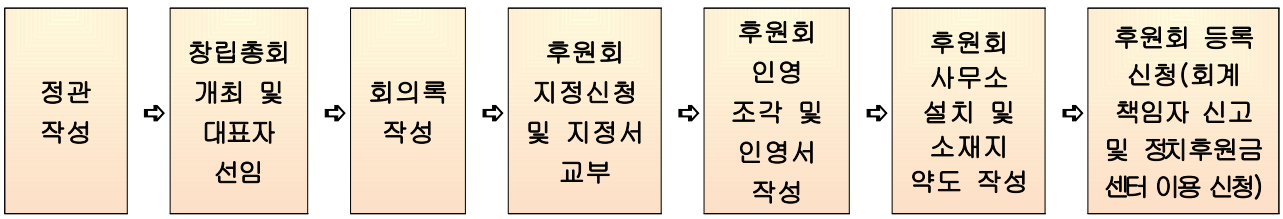
Ⅰ.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 후원회 설립 어떻게 하나?

- 후원회 개설을 희망하는 광역의원의 경우, 지역구는 선거구 관할 선관위에, 비례의원은 광역 선관위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미 중앙선관위 및 각 지역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회설립 가이드북**」이 공지되어 있다. ('지방의원 후원회 설립 관련 주요내용' 참고문서 참고)

- **후원회 또한 하나의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으로 창립총회부터 회의록 작성, 대표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등 설립 절차가 간단하지는 않다. 현재 정치컨설팅, 행정사무소 등 민간에서 후원회 설립 컨설팅을 진행하는 곳이 우후죽순 나타나고 있는데, 관할 선관위에 제출 서류 관련 양식과 절차를 확인하여 실제 후원회를 관리할 실무자나 관계자가 직접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후원회 설립부터 회계실무 등 지속적으로 선관위 담당자와 연락을 취할 일이 많기 때문에, 처음 서류 준비는 까다로워도 선관위와 소통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후원회 설립에 필요한 정관 등 각종 양식까지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다.

- 오히려 후원회 설립 후, **모금 방법과 후원금(정치자금)을 어디에 비중을 두고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후원회 설립 절차 흐름도>

◆ 후원회 운영 시, 유의사항

- **(후원회 대표자)** 후원회의 목적은 해당 지방의원의 정치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 취지에 맞게 대표자 선임이 중요하다. 대표자는 단순히 이름만 올려놓는 서류상 명의보다는 적극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하고 정치적 지원자를 선임하여, 실제 정치활동이 가능한 분을 선임하는 것이 좋다. 기존에는 유명정치인이나 국회의원, 지역 인사를 후원회장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면서, '22년 한 지방선거 후보의 경우 19세 청소년을 후원회 대표자로 선임하여 후보의 주 공약인 청년정책을 홍보한 바 있다[1].

1) 지방선거에 등장한 19세 후원회장… 청년 정치 바람이 분다 (세계일보 2022.04.11.)

또한, 실무상 유명정치인을 대표자로 선임 시 사무실 소재지나 예금계좌 변경 등 인감증명서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요구하거나, 행정상 협조가 필요할 때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다.

- **(회계책임자 선임)** 후원회 설립 시, 실제로 두 명의 회계책임자 선임이 필요하다. 회계책임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를 겸할 수 없고, 한 명의 회계책임자가 하나의 후원회와 정치자금 회계책임자를 동시에 맡을 수 없다. 국회의원의 경우 별도 지원인력이 후원회 등 회계업무를 담당하지만,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별도 지원인력이 없다. 실제로 실무(컴퓨터 사용이 용이하고 기본 회계지식이 있는 분)를 담당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가능한 자로 회계책임자를 선임하는 것이 좋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회계책임자로 선임하는 것을 추천한다. 후원회 유급사원으로 회계책임자에게 인건비 등 비용 지급도 가능하다.
- 지방의원 본인도 회계책임자 겸임이 가능한데,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아닌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정치자금)의 회계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별도 후원 및 정치자금 실무를 의뢰할 직원을 두기 어려운 경우, 의원이 직접 실무를 겸할 수도 있는데, 그에 따른 장단점이 따른다. 직접 정치자금을 관리하면 본인 책임하에 후원금을 투명하게 다룰 수 있으나, 의원이 직접 회계책임자를 겸함으로써 정치적 부담(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 확정시 의원직 상실)이 가중될 수 있고, 회계보고와 기부영수증 발급이 집중되는 기간에 실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 회계책임자는 직접 후원금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해야 하며, 매년 관할 선관위에 정기 회계보고를 해야 한다. '후원회' 정기회계 보고(연2회)와 함께 '후원회 기부금으로 받은 정치자금'의 사용내역도 의무적으로 회계보고(연1회) 해야 한다.

▪ **후원회 정기 회계보고**

구분	회계기간		보고기한	보고처
	부터	까지		
상반기	1.1 (또는 후원회 등록일)	6.30.	당해연도 7.31.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하반기	7.1.	12.31.	다음연도 1.31.까지	

▪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정치자금) 정기 회계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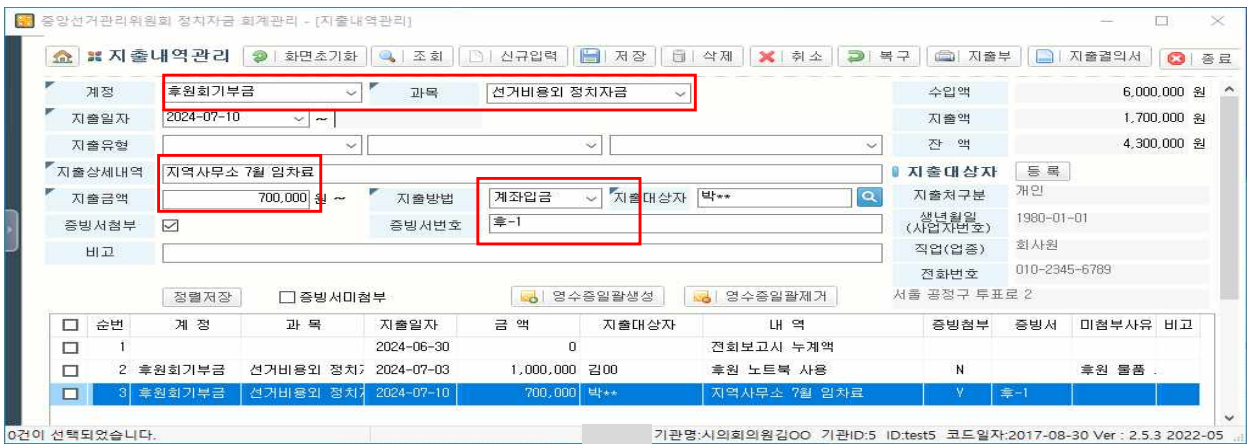
회계기간		보고기한	보고처
부터	까지		
1.1. (또는 후원회 등록일)	12.31.	다음연도 1.31.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cf. 선거(경선) 참여 회계보고 : 선거(경선)일 후 30일 이내

Ⅰ.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 **(후원회 사무소)** 현행 규정상, 후원회 사무소 설치 및 유급직원을 둘지 여부는 임의사항이다. 지방의원후보자는 보통 선거사무소를 후원회 사무소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개인에 따라 자택을 후원회 사무소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역 지방의원의 경우, 별도로 지역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후원회사무소로 등록이 가능하며, 사무실 공간을 구획을 나눠 후원회 사무소 사용이 가능하다. 단, 제3자로부터 무상 임대는 불가하며 임대차 계약 등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경비를 일부 부담하여 회계처리 해야 한다.
- 지방의원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과 달리 「정치자금법」에 장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사무실 소재지가 지역구 내로 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의회사무처 사무실에 후원회 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식당 등 영업장의 경우 관할 선관위에 사무소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진행이 필요하다. 또한, 후원회사무소 간판의 규격 및 후원회지정권자(지방의원)의 사진 게재를 제한하고 있지 않아,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여 후원회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 **(재정관리 및 투명성 확보)** 후원회는 후원자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아 운영되기 때문에 투명한 재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 회계처리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첫째, 정치자금은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며,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 정기회계보고 등록 후, 후원회 및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및 첨부서류가 현재는 6개월 간 공개열람이 가능하고, 고액 후원내역과 정치자금 실태를 보도하는 언론과 기획취재가 많아지고 있다.[2] 따라서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정치자금 회계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시 수입·지출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정치자금회계관리 프로그램 화면 예시>

2) 2023년 국회의원 301명 정치자금 공개-오마이뉴스·경향신문 공동취재('24.06.14.) cf.오마이뉴스는 '12년부터 국회의원 정치자금 사용내역을 매년공개

▪ 둘째, 정치자금은 의원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한다.
특히, 사적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안 된다. 정치자금 지출 가능 범위에 제약이 많아 보이지만, 역으로 '지방의원의 정치활동'을 위한 모든 소요 경비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개발 및 정책연구에 필요한 공청회, 연구비용, 의정보고서 제작, 의정활동 문자, 정당에 납부하는 직책당비, 의정차량 유류대 등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정치자금 지출 항목은 회계 실무지침을 참고하고 그 외 항목은 관할 선관위에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진행해야, 추후 부정사용으로 인한 반환 등 착오를 방지할 수 있다.

※ '사적 경비'에 해당하는 경우(「정치자금법」 제2조제3항)
- 가계의 지원·보조 및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또는 대여
- 향우회·동창회·종친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의 회비, 그 밖의 지원 경비
- 개인적인 여가 또는 취미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

▸ **'부정한 용도'** 란 사적 경비 이외의 경우로서 정치자금의 지출 목적이 위법한 것 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를 의미함.
(대법원2008. 6. 12. 2006도4982)

※ '부정한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기부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 실제 근무하지 않은 유급 사무직원에게 급여 지급 등

▪ 셋째,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있고,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정치자금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정당보조금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보통은 후원회 기부금 부족 시 의원 본인의 차입금(자산)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실제로 후원금을 모집하다 보면, 기부영수증 요청이 없거나 후원자 정보가 없는 소액 후원도 종종 발생한다. 그런 경우에는 거래은행에 입금자 성명·연락처조회(회보서)를 요구하여 후원자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입금자명의와 계좌 소유자가 다르거나(차명계좌), 단체나 기업명의 계좌로 후원금이 입금되는 경우가 있어, 확인 후 반환 처리가 필요하다. 후원회 회계보고 시 1회당 30만원을 초과한 기부자 명단은 별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10만원을 초과한 기명후원금에 대한 실계좌 소유자 여부 및 후원자 인적정보 확인이 중요하다.

Ⅰ.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 **(후원금 모금한도)**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금의 한도액은 광역의원의 경우 연간 5천만원, 기초의원은 3천만원이며, '24년 올해도 연간기준이므로 광역의원은 5천만원까지 후원모금이 가능하다.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지역구 지방의원 후보로 출마 시 특례적용으로 1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국회의원 3억원). 또한, 지방의원 후원회의 경우 후원자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후원이 가능하다(국회의원 후원회 500만원).

- 또한, 당해연도 사용하지 못한 후원금은 차기연도에 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거가 있거나 집중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때 정치자금 지출도 가능하다. 조례연구에 돈을 쓰면 홍보 예산은 줄어들 것이고, 사무실 운영과 관련하여 경상비와 인건비에 쓰게 되면 모금 한도를 다 채워도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 현행 구조상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집중하고 사용할 건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이유이다.

- **(후원모금 계획 및 홍보)** 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무엇보다 원만한 후원활동과 자금조달을 위한 계획이 중요하다. 후원자 모집 전략 수립은 지역사회 인사, 지지자, 당원 등을 대상으로 하거나 지역신문 광고,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SNS등에 의정활동을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소액의 다수 후원자를 모집하여 지지자를 확대하고, 후원자들과 소통을 위한 정기적인 의정문자 발송, 후원행사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정치자금으로 정치인 후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소 의정활동을 지지하거나 지원하고픈 동료·선후배 의원후원회에 후원도 가능하다.



<2022년 지방선거 광역의원 (예비)후보 후원회 홍보사례>

- **(모금방법 및 기부영수증 발급)** 현재까지는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한 온라인 후원금 기부는 중앙당후원회와 국회의원 후원회만 가능하다. 추후 지방의원 상시 후원회가 개설되면,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후원자가 계좌로 후원금을 직접 이체하는 방법 외, 다양한 온라인 후원방법(신용카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포인트 기부 등)으로 참여할 수 있다. 후원자가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영수증 출력도 가능하며, 이외에도, 정기이체서비스(CMS)를 이용하면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입금받을 수 있다. 단, 계좌이체 외 타 모금 방법을 사용 시 이용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하고 시스템별 이용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 후원자들의 기부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30일 이내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기부영수증을 발급 처리해야 하므로, 종이로 된 정액영수증을 사용하기보다 중앙선관위에서 제공하는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기부영수증을 관리하는 게 용이하다. 후원회에서 개별로 국세청에 연말정산용 기부금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후원자의 동의를 얻어 주민등록번호 전체번호를 파악해야 하며, 현재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과 영수증발급에 필요한 정보(주소, 연락처, 직업 등)만 수집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www.give.go.kr) 화면>

- **(영수증 보관)** 후원금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며, 결재 일자별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관할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므로 누락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특히, 후원회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정치자금의 경우

1년의 지출 내역을 연말 기준으로 한 번에 제출하기 때문에 평상시 영수증 관리를 하지 않으면 분실 위험이 크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지출 내역을 꼼꼼히 관리하여 영수증 사본 등을 미리 보관해야 한다.

- **(정치자금법 등 관련법규 숙지)** 정치자금법상 후원회 유급사원은 2명을 둘 수 있다. 엄격히 후원회 사무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야지만, 실제 직원을 두면 의정활동 지원 등 그 역할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국회의원의 경우, 후원회 유급사원 2명 외 정치자금으로 유급사원 5명(지역특보, 단기인력 등)까지 지급 가능하나, 지방의원 후원회는 후원회 유급사원으로 2명만 채용이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별도 상근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1인 사업장(후원회 법인)도 4대보험 가입 및 소득세(지방세) 신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실무상 고려할 부분들이 많다.
- 현재 선관위에서 4대보험이나 강의, 연구용역 등 원천징수 등 세금 관련 안내는 별도로 하지 않는다. 단순 인적사항과 관련 근무내용을 기입한 수령증 형식으로 회계처리를 대신하기도 하는데, 이는 추후 근로기준법 위반 및 세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문제 발생 시 후원회 책임이 된다. 후원회 운영 실무자들은 이런 부분까지 직접 확인하여 진행하는 등 평소에 관련 법규들을 숙지해야 한다.

◆ **정치인 후원은 '선한 압력'**

- 지방의원 상시후원회 운영을 앞두고 각종 청탁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섞인 이야기들이 나온다. 이와 같은 논리라면 국회의원 후원회의 존폐 문제도 함께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올해는 지방의회의원 상시 후원회가 적용되는 첫 해로 전국적으로 3,850여명의 광역·기초 지방의원들이 후원회 운영 시 혼란 등 과도기를 겪을 수 있다. 하지만, 후원회 제도가 잘 정착되면 오히려 정치자금의 흐름이 투명해지고, 정치 신인들에게는 비용부담 완화 등 정치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도울 수 있다. 정치인 후원은 적극적인 투표행위이며, 지지표시라 할 수 있다. 후원자들은 후원한 정치인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관심을 가지게 되며, 정치문화 형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자료공간> 해당자료를 참고바랍니다.

1.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립 가이드북 ['24.06.]
2.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 및 그 후원회의 정치자금 회계실무 안내['24.06.]
3. 정치후원금센터(기부영수증 발급) 이용 · 등록안내, 전자결제 신청안내['24.05.]
4. 정치자금회계관리 프로그램 설치 및 이용안내['22.05.]

[참고] 『지방의원 후원회 설립절차』 주요내용

※ 각종 서식 및 주요 질의답변 사례 등, 중앙선관위 가이드북 참조

Ⅰ 입법동향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24.2.20.)

○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지정 : '24.7.1.부터 가능 (법률 제20348호, 부칙 제2조)

○ 후원회 '기부 한도' 규정 신설 : (후원인별) 광역의원 200만원, 기초의원 100만원

- 후원인은 연간 모든 후원금을 합쳐 2천만원을 초과해 기부할 수 "없음"
- 개인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음"

○ 후원회 '모금 한도' 규정 신설 : (후원회별, 연간) 광역의원 5천만원, 기초의원 3천만원

- 동시지방선거 지역구 후보자로 등록시, 모금한도 2배 특례적용

Ⅱ 주요내용

※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립 가이드북』 (중앙선관위) 中 발췌

□ 후원회 설립 절차 (총 7단계)

① 후원회 정관 작성

○ 후원회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내부규칙 마련

○ 명칭, 후원금 모금·기부, 회계, 운영 등 작성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9조 참조)

② 창립총회 개최/대표자 선임

○ 후원회 결성 인원들을 모아 임시의장 선출, 정관 채택 등 위한 총회 개최

○ 개최 후 선임된 대표자에게 취임동의서 제출 받음

※ (선관위에 등록해야 정식 인정되므로) 창립총회 현장에선 후원금품을 모집할 수 없음

③ 회의록 작성

○ 창립총회 결성 과정을 기록하기 위한 것으로, 회의 진행 상황 명기

○ 기록자와 확인자의 서명 필요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담당자 인(도)장)

④ 후원회 지정신청/지정서 교부

○ 후원회로서 외형·실질을 갖춘 단체 → 지정권자(지방의원)에게 후원회 지정요청

○ 지방의원 : 1개의 후원회 지정 가능 / 지정서 교부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참조)

○ 후원회 대표자 : 지정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지정서 첨부하여 관할 선관위 등록신청

⑤ 후원회 인영 조각/인영서 작성

○ 후원회의 명칭은 의원 성명으로 정함 * 예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OOO 후원회

○ 인영(도장)의 규격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으며, 인영서에 날인(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참조)

⑥ 후원회 사무소 설치/소재지 약도 작성

○ 사무소는 1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사무소에 두는 유급사무직원은 2인까지 가능

- 후원회 대표자와 회계책임자에게 급여 지급시 유급사무직원에 해당됨
-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초과한 경우(2인 초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무소 소재지에 대한 관련 법령상 제한규정 : "없음"

○ 소재지 약도 : 인터넷 사이트 지도 등을 그림파일로 저장하여 작성

⑦ 후원회 등록신청

○ 지정권자(지방의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등록신청(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참조)

- 후원회 대표자→관할 선관위 등록신청(비례대표 : 도위원회 / 지역구 : 각 시군위원회)
- 회계책임자 신고서(1명만 가능, 의원도 겸임 가능)(규칙 별지 제27호 서식 참조) 동봉
- 정치후원금센터 이용신청서(정치자금영수증 발행목적) 동봉

○ 후원회 정관 내용의 법·규칙 위반여부, 등록신청 내용↔구비서류 일치여부, 후원회 명칭과 인영(도장)내용의 일치 여부 확인 必

□ 후원회 설립 이후 절차

① 예금계좌 변경신고

○ 최초 신고한 회계책임자 명의 정치자금 계좌→후원회 명의로 변경신고

○ 세부절차 : 후원회 등록증 수령(선관위)→고유번호증 발급(세무서)→후원회 명의 계좌 개설(은행)→후원회 명의 계좌로 예금계좌 변경신고(관할 선관위)

② 후원회 회원 모집

○ 정관에 따라 후원회 가입(탈퇴) 원서 제출 * 하나 또는 둘 이상 후원회 회원가입 가능

○ 후원회는 회원명부 관리 및 관련 서류 상시 보관 必

○ 후원회의 회원은 연간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의 후원금 기부 필요

③ 후원금 모금

○ 계좌이체·현금 등 이용해 후원금 모금 가능(인당 1개 후원회 대상 2백만원 상한)

○ 후원회가 연간 모금·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5천만원(광역의원 후원회)

○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선거 연도의 경우,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후원회는 연간 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음

④ 정치자금영수증 발행

○ 후원금을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까지 정치자금영수증 발행 / 교부

※ 정치후원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다만, 익명기부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후원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 영수증 발행 / 보관

⑤ 후원회 변경등록 · 해산

○ 변경등록 : 후원회 등록신청 내용 중 변경이 생긴 때, 14일 이내 신청

○ 해산 : 자격상실, 후원회의 지정철회, 정관의 해산사유 발생시 해산

- 후원회가 사실상 해산되는 날 이후부터는 (해산신고가 없더라도) 후원인으로부터의 모금활동 등 일체를 할 수 없음
- 후원회가 해산한 때, 해당 의원이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회계책임자가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회계보고 실시 (관할 선관위)

※ (참고) 불법 정치자금 규정한 법조항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례

《「정치자금법」 제32조》 (다음 4개 행위 관련 정치자금 기부 또는 받았을 때 불법)

1.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2.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선거와 교육위원회 의장·부의장, 교육감·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일**
3.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
4. **법인과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일**

《대표사건》

- **청원경찰법 통과 위해 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가 각각 개인 명의로 불법 후원금 기부**
  ⇒ (국회의원 6명 불구속 기소) **2013년 유죄 선고**
- **정유회사 경영자가 정유공장 유치 관련 불법 후원금 기부**
  ⇒ (국회의원 1명 불구속 기소) **2008년 유죄 선고**
- **법령·제도개선 청탁관련 외식업중앙회 불법 후원금 기부**
  ⇒ 상급자 지시로 소속 임직원 30명 후원 참여(前외식업중앙회장 '24년 벌금 250만원 선고)
- **법령·제도개선 청탁관련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불법 후원금 기부**
  ⇒ 연합회 회원대상 기부금 명목 4천6백여만 모금 및 후원 지시 (현재 소송진행중)
  (前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1심 징역 6개월 실형, 2심 벌금 1천만원 선고)

첨부 후원회의 회원의 자격, 기부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 관계법령

「정치자금법」 제8조(후원회의 회원)

① 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제31조(기부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할 수 없는 자와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

①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정치자금법」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1.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2.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선거와 교육위원회 의장·부의장, 교육감·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일
3.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과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일

가. 국가·공공단체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법인

다.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을 받는 법인

라. 정부가 지급보증 또는 투자한 법인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

②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건강한 정치를 위한 토양
정치후원금
비옥한 토양에서
울창한 숲을 이루듯
건전한 정치후원금이
건강한 정치문화를 이룹니다.
정치후원금센터
www.give.go.kr

Ⅱ. 정부부처 등 주요 정책동향

Ⅱ. 정부부처 주요 정책동향

1.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 (과기·기재부)

◇ (기본방향)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위한 R&D분야의 예타제도 원칙적 폐지 추진
◇ (보완방향) 1천억원 이상 대규모 R&D사업의 경우 기획 부실화·예산낭비 방지 위한 보완절차 마련

1 관계규정

○ 「국가재정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 추진배경

○ R&D 예타 제도 폐지 발표 ('24.5.17.,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

○ 예타 제도 폐지의 **후속방안** 마련 위한 투자관리시스템 혁신방안 수립

3 주요내용

① (연구형 R&D) 신속하면서도 건전한 연구개발 추진

○ 연구형 R&D는 추가 소요기간 없이 **신속히 추진**

○ **1천억원 미만***의 모든 사업은 **일반적인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사업추진

* 현행 「국가재정법」상 예타 기준금액은 500억원이나, 과기부에서 'R&D 예타 제도 개선방안'('22.9.)통해 발표한 상향 기준(1,000억원)을 고려하여 적용 추진

○ **1천억원 이상**의 연구형 R&D 사업은 예산요구 **전년 10월부터 사전 전문검토***를 실시하며, 사업의 당락 결정이 아닌 **기획 보완 중심**으로 추진

* 전문검토 항목 : 필요성 및 시급성, 사업규모 적정성, 추진내용 구체성, 유사 중복여부 등

② (시설장비/체계개발)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추진체계 도입

○ 시설장비/체계개발은 **선행기술개발**을 **분리***하고 **사업유형** 및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심사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검증 제도** 도입

* 대형 연구시설 구축 등에 필요한 핵심기술로 연구형 R&D로 先 추진

사업유형	특징	제도 적용방안	검증결과
공간조성 + 장비도입	• 선행기술 불필요 • 관리단순	1단계 심사	사업추진여부 결정 (예산반영)
연구시설구축 / 체계개발	• 선행기술 필요 • 관리복잡	2단계 심사	• 1단계 : 구축여부 결정 • 2단계 : 사업추진여부 결정 (예산반영)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요약)』



4 관리 / 이행계획

○ **(한도내 편성)** 부처는 차년도 예산요구시 **모든 R&D사업**을 예외없이 지출한도 내 편성하여 재정건전성 확보

○ **(법령개정)**

- R&D 예타 폐지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 심사제도 운영을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및 **심사지침** 제정 등 **신속** 추진

○ **(과도기 운영)** 국가재정법 개정 완료 전까지는 **현행 법령**(예타) 체제 내에서 **예타면제, 신속조사** 확대 등을 통한 **신속 착수 지원**

◇ 최근 전북 주요 R&D 예타 관련사항

○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 : 시급성 부족으로 예타 미통과('23.10.)

○ 푸드테크, 스마트팜, 농기계 분야의 디지털 전환 등 R&D 관련사업 계획중

○ (R&D 예타 폐지로)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및 기타 역점사업의 향후 추진에 탄력 예상

2.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 (관계부처 합동)

◇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 발표"

Ⅰ.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요성

◇ 반도체 경쟁력은 미래 국가 운명 좌우

○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 11년 연속 수출 1위 산업, 국내 수출의 약 16% 차지('23)

* GDP 비중 약 10%, 제조업 총부가가치의 약 20%, 제조업 총 설비투자의 약 43%

○ AI, 사회기반시설, 안보자산의 핵심부품으로 국가안보자산

→ 미래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

◇ 반도체 산업 전쟁은 클러스터 국가대항전 형태로 전개중

○ ❶첨단 제조업(→입지필요), ❷전·후방 밸류체인 연계 및 기술·인재 집약(→집적필요)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상 클러스터 조성 필수

○ 경쟁국은 반도체 주도권 확보를 위해 대규모 보조금, 세액공제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며 경쟁력 있는 클러스터 구축에 총력

< 경쟁국의 클러스터 구축 동향 >

- (일본) 구마모토현을 日 반도체 산업 재건 클러스터로 조성
  - TSMC 투자유치 위해 역사상 최대규모 보조금(12조원) 지급
  - 24시간 3교대, "불이 꺼지지 않는 공사"로 속도전 참전
- (대만) 기존 클러스터 확장으로 반도체 사활 승부수
  - TSMC 신주과학단지와 주변지역을 묶어 "大 실리콘밸리" 조성 프로젝트 착수
- (미국) 설계에서 제조로, 전 국토의 클러스터화 추진
  - 반도체과학법 통해 390억불 보조금, 25% 세액공제 파격지원
  - 애리조나(인텔), 텍사스(삼성), 뉴욕(마이크론) 등 제조거점 구축
- (독일) 독일을 EU 반도체 리딩 클러스터로 조성
  - 인텔 투자유치(42조원) 위해 14조원 보조금 지급

⇒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반도체 산업의 심장으로 집중 육성

– 이를 통해 미래 반도체 주도권 및 국가 경제안보 확보

Ⅱ.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비전

◇ 세계 최대·최고 클러스터, 국가경제와 민생에 활력을 주는 클러스터

구성

○ 팹리스 판교, 메모리·파운드리 등 제조거점 화성·용인·이천·평택, 소부장 안성, 최첨단 연구거점 용인 기흥·수원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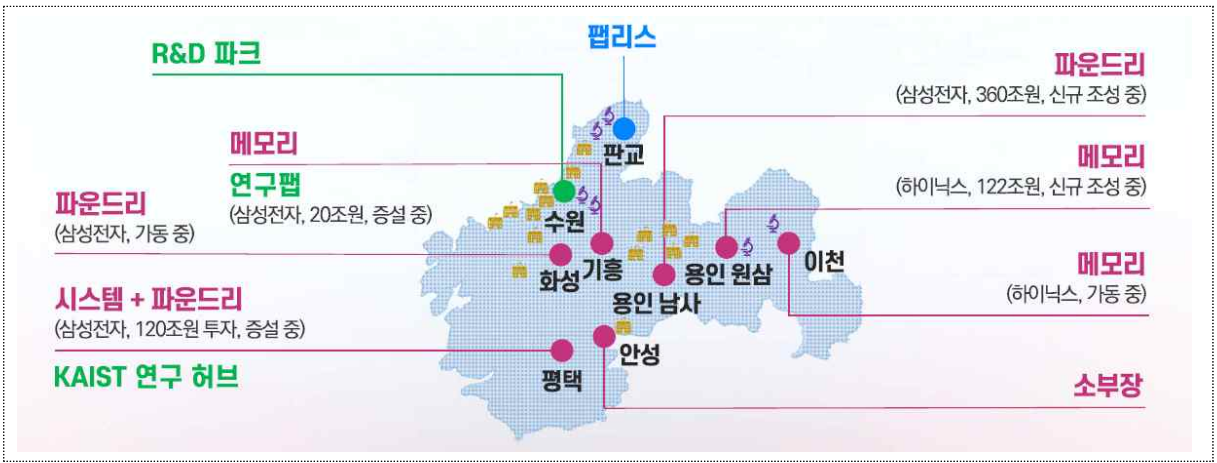
○ 반도체 생산 팹 19기, 연구 팹 2기 등 총 21기 팹 가동 중 → 생산 팹 13기, 연구 팹 3기 추가 완공시 총 37기

특징

❶ 세계 최대 규모 클러스터(2,102만㎡), 세계 최대 생산량(770만장/月)
❷ HBM·PIM 등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 최대 생산기지
❸ 2나노 이하 기반 팹리스-파운드리 등 시스템 반도체 全 생태계가 집적된 최첨단 시스템 반도체 허브
❹ '47년까지 총 622조원 투자 통해 팹 16기 신설 계획

– 생산 유발 650조원, 팹 운영 관련 인력 11만명을 포함한 직간접 고용 창출 346만명, 소부장 협력기업 매출 204조원 확대 등 효과 기대

< 메가 클러스터 >



Ⅲ. 메가 클러스터 4대 육성 과제

1 인프라 · 투자환경 조성

인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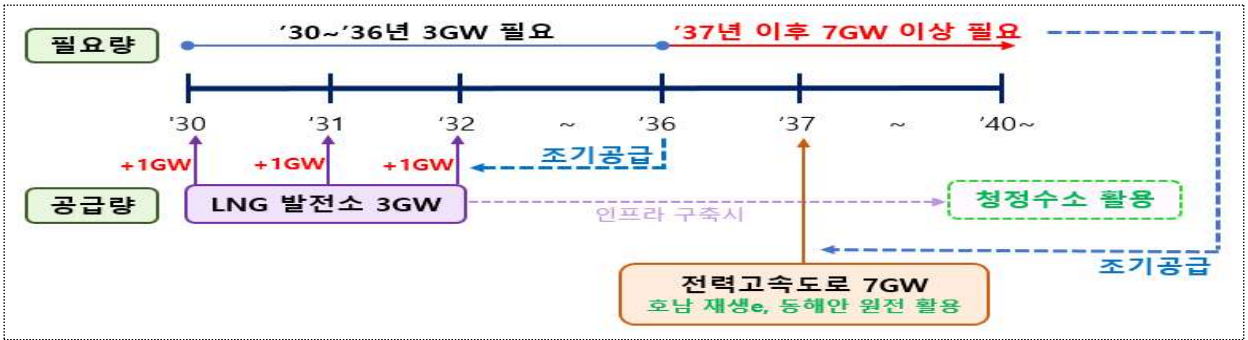
◇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의 필수 기반은 **전력·용수 인프라**
→ 정부 주도의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 (인프라 구축) 용인[남사·원삼] 클러스터 **전력·용수 공급계획 확정**

* 용인 남사(삼성전자, 360조원): '26 부지착공 → '28 팹 #1 착공 → '30 팹 #1 가동
* 용인 원삼(하이닉스, 122조원): '25 팹 #1 착공 → '27 팹 #1 가동

❶ (전력) 초기수요(3GW) **산단 內 발전**, 후기수요(7GW 이상) **원거리 발전** 활용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계획 >



❷ (용수) 약 110.8만톤/일 추가 수요 예상으로, **하수 재이용수, 팔당댐 잔여 용수, 화천댐 발전용수** 등 활용

□ (인허가 신속처리) **용수 관로, 송전선 등** 인프라 관련 **인허가 신속처리 제도**를 통해 **투자 지연 차단**

< 인허가 신속처리 제도 >

- **인허가 타임아웃제 활용**: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총리주재)에서 신속처리 의결 → 60일 內 인·허가 처리 의무, 지연시에는 인·허가 처리된 것으로 간주
- **송전선 인허가 일괄처리제 신규 도입**: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산중위 계류 중) 통해 송전선 인허가 의제 확대(기존 15개→32개), 건설기간 30% 단축 기대

□ (추진체계 강화) 인프라, 인허가 처리, 투자유치 등 **체계적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을 위한 **정부 추진체계 강화**

투자환경 조성

◇ 인센티브 확충, 킬러규제 혁파 등 투자환경 지속 개선

□ (**그간 투자환경 조성 성과**) 현 정부 출범 후 반도체 세액공제 상향, 세계 최대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 **파격적 투자환경 조성**

< 주요 투자환경 조성 성과 >

-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파격 상향(16→25%)
- 첨단산업 용적률 특례 도입(350→490%)
- 세계 최대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 산단 및 화평·화관법 킬러규제 개선
- 15만명 반도체 인력양성 추진(특성화대학원 최초 지정, 반도체 아카데미 신설 등)

□ (**향후 방향**) **인센티브 확충, 킬러규제 혁파** 등 투자환경 지속 개선

○ (**투자 인센티브**) **예산, 조세지원, 인프라 국비지원** 등 확대

– 반도체 **중소·중견기업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반도체 **정부지원 예산 대폭 확대**('24년 1.3조원, '22년 대비 2배 이상)

–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現 22개)

– **인프라 설치비 국비지원 확대** 및 **공공기관 주도 인프라 구축** 추진

○ (**킬러규제 철폐**) **규제 혁신**으로 강도 높은 킬러규제 철폐 추진

– 업계 건의 등을 통해 파악한 각종 킬러규제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총리)**』상 규제개선시스템***을 통해 신속 철폐**

* 규제개선 요청 접수시 소관 규제기관에 개선방안 요청여부 심의 →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속히 규제 정비

– 첨단산업 규제 정도를 보여주는 **지수 도입**으로 **규제상황 지속 관리**

* 첨단산업규제지수: 매년 변화되는 규제 강도·수준을 평가, '24.2분기 마련 계획

2 생태계

소부장 경쟁력 강화

◇ 취약한 소부장 경쟁력은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 노출로 연결
→ 소부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취약기술은 해외기업 유치로 보완
→ '30년 자립률 50%(現 30%), 1조 클럽 기업 10개 육성(現 4개)

□ (경쟁력 강화) 소부장 개발이 상용화와 직접 연계되는 R&D 체계 구축

○ (테스트베드 신설) 업계 숙원사업인 소부장 실증 테스트베드 조기 구축(제품 개발 후 양산라인 투입지원)

– 용인 하이닉스 클러스터 내 "소부장-칩 기업 양산연계 테스트베드*" 구축('25착공, '27완공) → 국가 첨단반도체 실증 테스트베드(ASTC) 구축

* 총사업비 9,060억원(국고 3,930, 지방비 730, 민간 4,400), '23년 예타 신청

○ (R&D 지원) 대규모 소부장 R&D('24년 680억원), 수요기업 로드맵 기반의 소부장 기업 지원사업 신설 추진

* 수요기업 로드맵 기반 소부장 기업 개발계획 제출 → R&D·양산 지원 → 수요기업 양산 투입

□ (해외기업 유치) 글로벌 TOP 10 반도체 장비 기업 중 5개(국내 포함시 6개) 기업 R&D 센터 유치 성과

* 램리서치·TEL·ASM·AMAT·ASML + 국내 세메스

○ (TOP 10 유치) 대폭 확대된 현금지원 인센티브* 활용, 국내 경쟁력이 부족한 검사·세정·식각 등을 타겟으로 TOP 10 기업 유치

* 외국인 투자시 현금지원 4배 확대: '23년 5백억원 → '24년 2천억원

○ (유치성과 신속 추진) 정상순방 계기(네, '23.12) 발표한 ASML-삼성전자간 EUV 기반 R&D 센터 투자(약 1조원) 입지결정 등 신속 진행

팹리스 육성으로 반도체 밸류체인 완성

◇ 파운드리 강점 기반으로 팹리스 육성을 통한 반도체 밸류체인 완성
→ 업계 애로사항인 ❶네트워킹, ❷자금, ❸시제품 제작기회 해결 주력
→ '30년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 10%(現 3%),
글로벌 TOP 50 팹리스 10개 육성(現 1개)

□ (네트워킹) 집적단지 조성 및 기술교류회 신설

○ 개발자간 아이디어 공유, 신기술·제품 개발 지원 등을 위해 **판교 內 팹리스 집적단지** 조성('26년 착공)

○ 수요기업-팹리스 **기술교류회 신설**('24.1월)

□ (스케일업 금융지원) 팹리스 **스케일업, 운영자금 안정화 지원 강화**

○ 향후 3년간('24~'26) **24조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우대 지원**하는 **"반도체 생태계 도약 프로그램"** 마련('23년 6.6조원)

* 산은·기은·수은·신보·무보·기보 참여, 시중 대비 최대 1.3%P 우대 금리 제공 등

○ **3천억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23년 조성 결정) **투자 개시**

* '24년 최대 700억원 집행 목표

□ (시제품 제작·검증지원) **개발 비용 지원** 및 **파운드리 기업과의 협력 강화**

↳ Multi Project Wafer: 웨이퍼 1개에 여러 종류의 반도체 시제품을 생산

○ 시제품 제작 비용 **국비 지원 규모 확대**('23 24억원→'24 50억원)

– 팹리스의 **첨단칩 개발 지원**을 위해 **초미세 공정에 대한 국비 지원 신설**
(前 10나노 이상 MPW 국비 지원 → 改 10나노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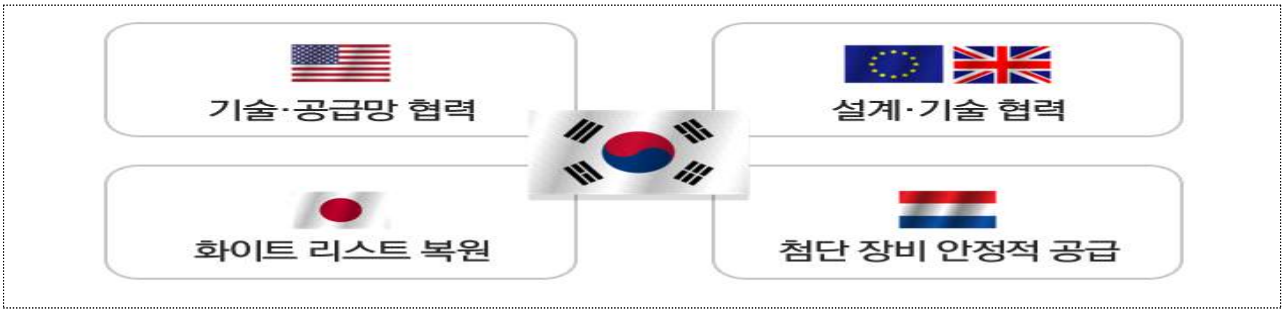
○ 파운드리 기업의 **시제품 제작 개방 횟수 확대**('23 62회→'24 72회)

○ 팹리스가 개발한 칩의 성능·검증을 위한 **'검증지원센터' 구축**

반도체 동맹 기반 공급망 안정화

◇ **정상 외교**를 통한 미·일·EU(네)·영 등 반도체 주요국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공급망 안정화 기반 강화**

< 반도체 협력체결 현황 >



□ (**공급망 위기 대응**) 주요국(미 · 일, 네, 영)과 **공급망 플랫폼 구축**을 통해 **핵심소재 등 공급망 공조** 구체 이행

* 한·미·일간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협력 합의('23.8월), 한·네간 "핵심품목 공급망 대화체" 신설 합의('23.12월) 등 활용

□ (**글로벌 R&D 협력**) **글로벌 첨단 연구 팹**(美 SUNY, 조지아공과대학교, 獨 프라운호퍼연구소 등) 등과 기술협력 추진*, "R&D+인력교류" 협력 위한 **현지(美·EU) 「산업기술 협력센터」 설립**

* 첨단패키징 기술개발제품 성능평가 활용 등

□ (**인재 교류**) 글로벌 반도체 인력 부족 공조를 위한 **석박사**(한-네), **학부생**(한-미)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한-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ASML·IMEC 연계 현장교육 프로그램('24~'28, 양국 약 500명)
(한-미) 첨단분야 청년교류지원: 美 주요대학 연계 이공계 인재교류('24~'27, 약 1,923명)

□ (**무역안보이슈 대응**) **반도체 장비 주요국**(미·네·일)과의 **양자 수출통제 대화채널 기반 공조 강화** 및 **다자 수출통제체제*** 대응

* (예) 바세나르 체제 : '재래식무기'와 재래식무기에 전용가능한 '이중용도품목'의 분쟁 다발지역 확산 통제('96년 설립, 회원국 42개국)

□ (**기술보호 강화**) **기술 유출 처벌·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내 산업기술 보호 노력**(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법사위)

3 초격차 기술

◇ 메가클러스터에 3大 미래 반도체 거점 구축 및 연구인프라 강화
→ 판교(AI), 수원(화합물), 평택(新소자/첨단 패키징)의 차세대 기술 Hub化
→ 국내·외 반도체 연구 인프라를 모으고 민관 협업 시너지 창출

□ (현황) 전 분야에 걸친 AI 확산과 디지털 대전환(DX)에 따른 고성능 반도체 수요 급증 및 다양화로 반도체 기술 패러다임 변화*

* AI반도체(GPU·NPU) 및 고사양메모리(HBM) 수요 증가, 연산과 저장의 통합(PIM), 저전력화, 첨단 패키징(Chiplet), 실리콘의 한계를 돌파할 화합물 반도체 등

○ 우리가 열세인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기술 선점(新격차 확보)과 더불어 메모리반도체 기술 고도화(超격차 유지)를 위한 기술 거점 구축 필요

※ 미래 반도체 혁명은 3대(AI, 양자, 바이오) 게임 체인저 혁명도 가속화하여 의료, 교육, 공공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목표) 차세대 기술별 연구개발/교육 거점 3곳(판교, 수원, 평택)을 구축하여 메가클러스터 경쟁력 강화 및 전국 확산 지원

① **판교** → 국산 **AI반도체** 고도화 및 **K-클라우드 기술생태계** 거점으로 육성
② **수원** → **화합물 반도체** 산·학·연 협업 거점으로 육성
③ **평택** → **차세대 소자 및 첨단패키징** 기술·인재 거점으로 육성

① 판교 : 국산 AI반도체 고도화 및 K-클라우드 기술생태계 거점

❶ (국산 AI반도체) 팹리스 지원을 통한 저전력·고성능 국산 AI반도체 개발 및 단계적 고도화(NPU → 저전력 PIM → 극저전력 PIM)

❷ (K-클라우드) 국산 AI반도체 기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과 HW·SW 기술생태계 완성* 등 'K-클라우드化'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 글로벌 최고 수준 GPU 대비 **AI서비스 전력 소모 1/10 감소, AI학습 성능효율 2배 향상**을 목표로 **'K-클라우드 기술개발' 예타 조사** 중(1조원 규모, '23.10월 예타 대상사업 선정)

❸ (AI+민생) ①안전·사회문제 해결, ②미래교육 혁신, ③디지털 탄소중립 등 국민의 삶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꿔나가는 다양한 확산모델* 창출

* 국산 AI반도체 사용 시 정부사업 인센티브 부여, 기업·관계부처·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K-클라우드 얼라이언스'를 통해 신규사업 발굴,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 등 추진

② 수원 : 화합물 반도체* 산학연 협업 거점

* 두 종류 이상의 원소 화합물로 구성된 반도체로 실리콘에 비해 전력효율, 내구성이 우수

❶ (**생태계 조성**) 경기 지역 **산·학·연 협업을 중심**으로 기술진입 단계인 화합물 반도체 **R&D-실증-분석 전주기 지원**

- 화합물 반도체는 **메가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통신, 광(光), 전력 반도체 등 **지역별 거점들과 유기적 협업** 추진

※ 대전(통신, 국방 반도체), 광주(광(光) 반도체), 부산·포항(전력 반도체)

❷ (**4대 전략 분야**) 화합물 반도체에 특화된 **4대 분야**(우주/국방, 차세대 통신, 전력, 센서) **육성**으로 미래 성장동력 창출*

* 화합물 반도체 시장은 '22~'32년 간 432억$→1,191억$ 확대되며(PRECEDENCE RESEARCH), 초고속·고전압·항온성·내구성 특징으로 고성능과 극한환경 대응이 필요한 분야에서 활용

③ 평택 : 차세대 소자, 첨단패키징 등 기술/인재 육성 거점

❶ (**산학협력 허브**) KAIST **평택 캠퍼스를 신규 조성**하여 **고도의 기술 개발과 최정예 인재 양성**을 위한 반도체 산학협력 허브 구축

- '24년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29년 완공이 목표(총 5천억원 투입)

❷ (**연구센터 설립**) **차세대 반도체를 중점 연구**하는 2개 연구센터 설립

- 미래 신기술* 개발, 리더급 인재(총 1천명) 양성, 산학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을 이끌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 차세대 소자(강유전체, 자성체), 첨단 패키징(수직적층, 이종접합), 신개념 설계(뉴로모픽, PIM)





팹 서비스 연계·협력(MoaFab 통합 서비스)

❶ (**공공 팹 연계**) 지역별/기관별로 산재해 있는 **반도체 연구 인프라를 온라인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팹 서비스와 인재양성 프로그램 제공

- (1단계, '24.上) 나노종합기술원[대전], 한국나노기술원[수원], 나노융합기술원[포항]
- (2단계, '24.下) 한국전자통신(연)[대전], DGIST[대구], 서울대 반도체공동(연)[서울]
- ('25년 이후) 기타 대학·연구기관 팹으로 통합 대상 확대

❷ (**글로벌 팹 연계**) 미국 NY Creates, 벨기에 IMEC, 프랑스 LETI 등 **해외 첨단 팹과 연계**하여 **국내외 이용자의 서비스 활용 범위 확대**

- ①첨단 시설·장비를 활용한 국제 공동연구, ②인력파견 및 교류(엔지니어, 석·박사), ③소부장 테스트베드 공동활용 추진

4 인재

◇ R&D, 특화교육프로그램,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이 필요한 탁월한 인재를 충분히 양성**하고, **글로벌 수준의 인재확보에 총력**

□ (**현황**) **반도체 인재는** 글로벌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한 핵심**으로, **주요국은 적극적으로 인재양성**을 추진* 중

* (미국) 10년간 반도체 인력을 2배 이상 양성(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22)
(유럽) 기술 주도권 강화를 위해 고급인력 발굴 및 교육(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 '23)

○ 반도체 산업 규모 확장에 따른 **중장기적 반도체 산업인력의 수급 불균형 예상**으로 **추가인력이 필요***하며, **석·박사 등 고급인력 확보가 절실****

* 반도체 산업인력 규모: '21년 17.7만 명 → '31년 30.4만 명('22, 한국반도체산업협회)
** '21년 반도체 업계 취업자(5,058명) 중 석·박사(431명)는 10% 미만

□ (**개선**) 혁신적 규제완화와 R&D 수행, 특화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탁월한 인재를 충분히 양성**하고, **글로벌 인재의 허브**로 도약

수요 맞춤형 젊은 인재 양성

❶ (R&D 기반 고급인재 양성) AI·시스템반도체 특화 교육 및 기업수요형 R&D, 반도체특성화대학원, BK연구단 등 석·박사 인재양성 확대

- (AI반도체 대학원) AI반도체 설계 및 SW연구, 산·학 연계, 국제협력 등을 통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석·박사 인재 양성**

  * 3개교(서울대·KAIST·한양대), '23년 41명 → '24년 90명 선발

- (시스템반도체 융합교육과정) **석·박사를 대상으로 융합교육과정을 개발 및 지원**하는 **"양성센터"를 산·학·연 컨소시엄 기반**으로 운영

  * 5개 분야(AI, IoT, 바이오, 자동차, 에너지)별 특화센터 운영 및 센터당 140명 양성 추진

- (기업수요형 R&D 및 멘토링) **석·박사 과정 인력**이 산업계 수요에 따라 **R&D과제**를 **수행**하여 **실전형 고급인력 양성**과 **기술확보** 동시 추진

  * R&D 과제 47개('23년) → 60개('24년)

-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3개교 → 6개교로 2배 확대

  * 3개교 135명('23) → 6개교 270명('24)

- (BK교육연구단) **지능형 반도체 분야를 확대하여 석·박사급 고급인재 육성 및 인재양성 기반 강화**('22년 3개 → '23년 10개 → '24년 13개)

  * '27년까지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국제화 경비, 연구활동 지원비 등 지원

❷ (실전형 인력 양성) **학부생**이 **직접 설계한 칩 제작 지원**(Mychip) 및 **반도체 특성화 대학/반도체 아카데미** 등 실무에 능한 인재양성 추진

- (My chip) **반도체 설계전공 학부생**에게 공공 팹(Fab) 기반으로 **칩을 제작하여 설계검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전형 설계인력 양성**

※ '23년 100명 → '24년 600명 → '26년 1천명 이상으로 확대 추진

- (반도체 특성화 대학) 8개교→18개교로 **2배 이상 확대**하여 **학사급 실전 인재 양성 기반** 마련 및 산업인력 수요에 적극 대응

* 8개교 865명('23) → 18개교 2,306명('24)

– (반도체 아카데미) **수요기반* 교육과정**(실습중심의 분야별·수준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현장 맞춤형 인력을 신속히 양성****

* 18개 반도체 기업의 사내교육 커리큘럼 및 전담강사를 활용

** '23년 520명 → '24년 800명

❸ (규제 혁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 정원규제 완화** 및 **산업 전문가의 교원활용** 확대, **계약학과·계약정원제 제도개선** 추진

– (정원·교원) 학과 신·증설 시,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증원이 가능하고, 겸·초빙 교원 자격요건 완화 및 채용 상한 확대** 근거 마련('23년)

– (취업연계) **3개 과기원**에 학·석사 통합과정으로 **계약학과 신설*** 및 **첨단 패키징 분야**에 **계약정원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추진

* '23년 10개교 401명 → '24년 13개교 551명, DGIST·UNIST·GIST 신규 개설

** 첨단패키징 분야 20명('24년 신규) → 140명(~'27년 누적)

글로벌 수준의 인재 확보

❶ (해외진출) 국내 연구자가 **세계 최고**의 **연구자와 함께 연구**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확충**하도록 **해외 인력교류·파견 확대**

– **'24년 560명**의 국내 석박사·박사후연구원의 해외 파견을 지원하고, **'27년까지 총 2,060명**의 국내 우수 인재 파견

❷ (공동연구) **전략적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선도국과의 R&D 협력 증진**

– (공동 R&D) **미국 NSF, EU 집행위**와 **공동펀딩 방식**으로 **반도체 전략 분야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하여,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

※ 영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국제공동연구 확대를 추진 중

– (R&D 협력센터) 한–미, 한–EU 반도체 기술 개발,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지원 및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미국과 EU에 **해외거점 구축·운영**

– (연구자 포럼) 한–미, 한–EU 간 **정기적인 반도체 연구자 포럼 개최**로 연구자의 **연구정보 교류** 및 **상호 토론**을 통한 **공동연구의 질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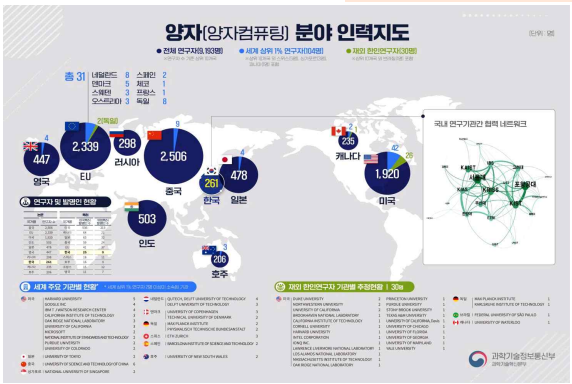
❸ (국내유입) 첨단 R&D 경쟁력을 위해 국가 전략기술 분야 중심으로 박사·석학급 전략적 해외 인재 및 해외 우수인재 유치 지원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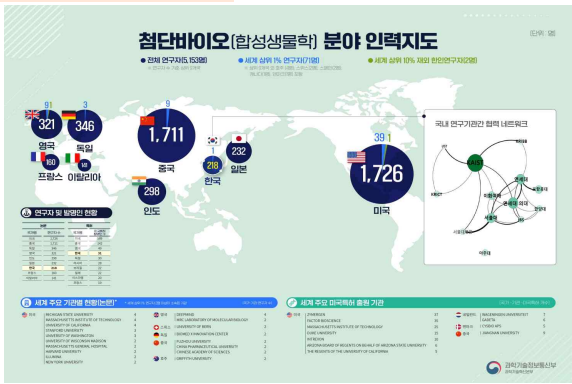
– (해외 연구자 유치 확대) '24년 88명의 해외 연구자를 신규 유치하고, '24~'27년까지 총 500명의 우수 인재 확보 추진

– (전략기술 인력MAP) 주요국 반도체 분야 최고 수준 연구자·연구기관*을 논문·특허 등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여 우수 해외 연구인력 유치에 활용

* 핵심 연구자(세계 상위 1% 우수연구자, 재외 한인 등), 국가별 분포, 주요 연구기관 현황 등

글로벌 인력지도 예시





– (사이언스 카드 우대 확대) 장기 체류기간 부여 및 가족 체류 지원 확대

* 장기 체류기간 부여, 배우자 취업, 부모초청 소득기준 완화 등

– (외국인 친화적 원스톱 정책지원) 외국인 연구자·유학생에게 입국 → 생활 → 정착(국적취득)까지 전주기 밀착형 서비스 제공

* 입국 전 이사, 비자발급(갱신), 주거, 교육, 의료, 문화 활동, 국적 취득 등 서비스 제공

❹ (제도개선) 글로벌 R&D 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제도 개선

– (국제공동연구 기반 제도) 정부 R&D(공동연구)에 해외 연구기관 직접 참여 허용, 지재권 소유기준 매뉴얼 마련(2월)

– (글로벌 R&D 인센티브) 글로벌 R&D의 기업 매칭 연구비 부담 완화, 1인당 과제 수 확대*(2월)

* (책임) 3개→4개 과제 / (참여) 5개 → 6개 과제

Ⅱ. 정부부처 주요 정책동향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소관부서 : 미래산업과)

○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발표하면서 622조원 투자 지원 위해 산단 지속 조성 및 전력·용수 인프라 적기 공급하고, 양산형 소부장 실증 테스트베드 신설, 24조원 규모 정책금융 지원으로 투자를 가속화하며, 메가 클러스터 내 3대(판교, 수원, 평택) 연구개발·교육 거점 구축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음

○ 최근에는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금융, 인프라, R&D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음

○ 이러한 대규모 반도체 개발 및 지원 프로그램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수도권은 갈수록 비대해지고 지방은 위축되어 지방소멸을 가속화하고 있음

○ 나아가 최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저출생수석실 설치 및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정작 수도권집중 해소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음

○ 최근 전북대가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선정(‘24.6.13)과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의 세부 분야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사업 등 주요 정부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이와 별도로 전북자치도에서는 반도체 산업 및 관련 소부장 기업 인프라가 필요한 상황이며 추후 이에 대한 기업 유치전략 및 방안이 필요해 보임

3.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력 (산업통상자원부)

◇ 정부 주도로 재생에너지 체계적 보급, 공급망 강화해 시장 확대에 선제적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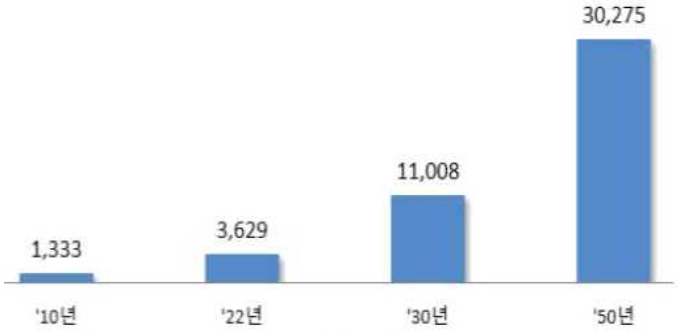
1 추진배경

□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에너지안보의 핵심 수단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 기후 위기 및 에너지 안보 문제 → 재생e 관련 국제적 요구 확산

*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23.12) 계기 "재생e 설비 3배 확대 선언", RE100 등

- '23년 신규발전설비 투자(8,200억불) 중 재생e 설비투자(6,590억불)가 80%



< 세계 재생e 발전설비 규모(IEA, 단위: GW) >



< 세계 재생e 투자 추이(IEA, 단위: 억불) >

○ 주요국은 보급 확대에 따라 태양광·육상풍력 중심으로 발전단가* 하락

* (균등화발전비용(LCOE, USD/MWh) (IEA, '24.1)) 太 '10450 → '2250(89%↓), 陸風 '10105 → '2235(67%↓)

○ 자국의 재생e 기술지배력 확대, 산업육성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

* 美 IRA, EU 탄소중립산업법 등 지원 강화 / 美「해상풍력 안보 전략」수립 등

□ 우리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위한 재생e 본격적 확산 필요

○ 우리도 국가 NDC 목표 달성 등을 위해 그간 보급 확대에 중점

* ('17) 재생 7.1GW (太 3.7GW, 風 1.1GW) → ('23e) 재생 30.0GW (太 23.9GW, 風 2.1GW)

○ 양적 확대는 전력계통 부담, 설비 난립, 높은 비용 등 한계 노정

→ 지난 2년간, 시장 질서를 보다 건전화하는 데 집중

* 전력계통 등 발전사업 책임성 강화, 소규모 특혜 종료, 경쟁 등 시장기능 강화

○ NDC·전력기본계획 등 이행을 위해, 재생e 확대·재도약이 필요한 시점

2 정책 환경

□ 정부 목표 대비 보급 지연, 높은 비용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

○ 인허가 지연, 주민수용성 저하 등으로 정부 목표 대비 보급 지연

* (10차 전기본, '30년 목표) 海風 14.3GW, 太 46.5GW ↔ ('23년 누적) 海風 0.1GW, 太 23.9GW

– 해상풍력복잡한 인허가, 태양광입지고갈, 전력계통 포화, 주민수용성 저하

○ 이에, 타국 대비 경험축적을 통한 발전단가 하락이 더뎌, 국민 부담↑

□ 국내 공급망 구축으로 에너지 안보 확보 및 해외 진출기반 마련 필요

○ 국내 보급은 내수 확대 등 공급망 구축 및 기술경쟁력 확보의 기회

– 최근 해외 재생e 프로젝트 수주도 국내 산업의 기회 요인

○ 공급망 구축에 실기한다면, 공급망 약화 및 안보문제 우려

– 선도기업과의 기술격차 확대(풍력터빈), 저가 외국산 시장진입(태양광)

□ 시장 환경은 급변하고 있어,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되는 시점

○ 국내 보급은 내수 확대 등 공급망 구축 및 기술경쟁력 확보의 기회

– 최근 해외 재생e 프로젝트 수주도 국내 산업의 기회 요인

○ 그간에는 정부가 의무수요 창출*, 최근 민간의 자발적 시장수요 부가

* RPS(신재생e 공급의무화,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시장

– 특히, 최근 상대적 경제성 향상으로 PPA(전력구매계약) 수요 증가*

* 언론보도 종합 결과, 주요 재생에너지 수요기업에서 총 1.3GW 규모로 추진 중

○ 이에 따라, 재생e 시장에 초과 수요가 발생하여 국민부담 증가*

* REC 현물시장 (만원) : ('21) 3.5 → ('22) 5.7 → ('23.9) 8.1 → ('24.3) 7.9

○ 변화한 환경에 맞게 새로운 재생e 제도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

3 추진 전략

목표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질서 있고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기본 방향	◇ 정부 주도(Top-down)로 연평균 6GW 내외 보급 추진 ◇ 공급망 구축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 시장제도 정비를 통한 확산 기반 구축

추진방향	세부 추진과제
1. 건강한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	1 정부 주도의 계획적 해상풍력 보급 2 해상풍력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 3 안정적인 해상풍력 단지 운영 기반 조성
2. 질서있는 태양광 확산	1 입지유형(산단·농지 등)별 전략적 보급 2 전력망 여건을 고려한 질서있는 신규설비 진입 3 공급망 안정화 및 기술력 확보 지원
3. 새로운 시장에 맞는 제도 전환	1 정부 주도의 체계적 보급을 위한 RPS 제도개편 2 PPA 활성화 및 자발적 재생e 시장 조성
4. 해외 시장 진출 지원	1 원스톱 진출 지원(재생e 해외진출 협의회, 가칭) 2 정부간 협력으로 Top-down 개발, 단계별 맞춤 지원

4 정책 방향

[1] 건강한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

[1-1] 정부 주도의 계획적인 해상풍력 보급 추진

□ 조속한 「해상풍력특별법」(국회논의중) 제정으로 계획입지제도 법제화

○ 정부주도의 입지발굴, 환경성·수용성 확보로 질서 있는 개발

○ 정부가 사업과정 전반 지원 → 실패·지연위험 경감, 안정적 보급

□ 법 제정전, 준(準)계획입지인 집적화단지 제도 활성화로 공공성 강화

* 지자체가 입지발굴, 주민수용성 확보를 주도시 단지 지정 및 인센티브 부여

○ 지자체·중앙정부 협업 강화 및 참여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재설계

[1-2] 해상풍력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공급망 경쟁력 강화

□ (제조) 공급망 강화를 중심으로 경쟁입찰시장 운영·평가 개선

○ 비가격 평가 강화, 기술이전, 일자리 및 산업 전후방 연계효과 평가

○ 업계 협의를 거쳐, 향후 2년간 입찰 물량·시기·평가 등 로드맵 발표(7월)

□ (설치) 보급 확대에 대비한 항만·선박 등 설치 인프라 구축 지원

○ (항만) 항만 활용·개발 등 해상풍력 인프라 구축방안 부처협의

* 관계부처 기본계획에 해상풍력 지원 인프라 관련 내용 반영 방안 협의 등

○ (선박) 15MW급 설치선 건조 지원, 국내외 선사-개발사간 협력 체계

□ (금융) 자금 조달 원활화를 위한 펀드* 등 추가지원 방안 발굴

* 미래에너지펀드(금년 1.2조원 → '30년까지 9조원 조성, 금융위 '24.3 발표)

[1-3] 안정적인 해상풍력 단지 운영을 위한 기반 조성

□ (제도) 해상풍력 안보이슈, 신시장에 대비한 운영·관리체계 고도화

○ 프로젝트 인증제도* 도입·시행, 표준·인증에 안보 요소 포함

* 풍력발전 선도국도 프로젝트 인증제 도입, 단지 운영의 안전성, PF 용이성 등 기대

○ 사이버·시스템 보안관리 강화, **부유식 해상풍력** 안전기준 등 **선제 수립**

□ **(기술·인력)** 안정적 운영, 고장시 신속 복구를 위한 **운영·관리 역량 확보**

○ **운영·관리분야 기술개발**, 교육 시설·프로그램 구축 등 **인력양성 지원**

[2] 질서있는 태양광 확산

[2-1] 입지별 전략적 보급, 제도개선 통한 수용성 확보

□ **(산업단지) 주민·계통 수용성이** 양호한 **산단태양광 활성화** 추진

○ 업종·입지 **규제*** **완화, 승계 위험 해소로** 입주기업 **참여율 제고**

* 입주제한 해제(산단별 관리계획), 이격거리 면제(지자체 조례) 등

○ **300MW 규모 공공 시범사업「햇빛산단 프로젝트*」**추진, 특례 실증

* 미포(울산)·명지녹산(부산) 150MW(추진중) + 기업 수요를 고려하여 150MW 추가발굴

□ **(농지)** 「**영농형** 太 **도입전략**('24.4, 농식품부)」**후속조치** 추진

○ 입지규제 완화, 안전기준 수립 등 방안 **관계부처 협의**

○ 태양광 연계 **ESS의 기술·경제성 검증** 통한 **계통수용성·수익성 제고**

□ **(건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화** 연계 **BIPV 활성화** 기반 마련

○ 정부 지원사업 내 **인센티브** 및 관련 **기술·시공기준*** **개선 추진**

* 건물태양광의 정의·유형 마련, 재생에너지 원별 보정계수 개편 등

○ 합리적인 **건물 구조·내화 안전성** 확보 위한 **관계부처 협의** 추진

□ **(제도)** 이격거리 규제(지자체) 등 합리적 개선, 중대형 확산의 **제도기반 구축**

○ **(이격거리)** 인센티브* 등 **자발적 개선**→지연시 **통일적 규율****(법령개정)

* (예) 융복합지원사업 평가시 가점 확대('24.3) / ** 주민수용성 확보는 개별 인허가나 절차 활용

○ **(이익공유) 법령상 근거 없는 이익공유** 관행은 합리적으로 개선

○ **(집적화단지)** 제도내 **태양광 특화형 기준*** 마련 → 중대형 太 확산

* 태양광 설비에 대한 기준·절차 완화, 입찰가점·융자 등 특례 부여

[2-2] 전력망 여건을 고려한 질서있는 설비진입 추진

□ (입지유도) **계통여유지역으로** 태양광 **신규설비의 진입수요** 유도

○ 전력계통 정보 공개* → **여유지역 사업 유도** 및 **예측가능성 제고**

* 전력계통 통합정보시스템 구축('24.下, 한전): 입지별 계통포화도, 전력망 건설계획 등 공개

○ **지역별 계통여건이** 사업성 고려에 영향을 주도록 **인센티브 차등 부여**

□ (인허가) **'유연한 접속'** 의 원칙 하에 **계통이용의 효율성 극대화**

○ 계통포화변전소에 대한 신규 **접속신청시, 연계시기 조정**

○ **유연한 조건 수용 설비에** 대해서는 RPS 연계 **인센티브 부여 검토**

□ (유연성 확보) **미활용설비 집계·관리** 및 **태양광-ESS 연계 지원**

○ 전력통계 상 **미집계 태양광의 실태파악** 및 **계전기 설치** 유도

○ 재생e 정부 지원사업 개편 → **계통포화지역, 분산형** 등 **ESS 보급지원**

○ **포화지역** 대상 **ESS 연계 잉여전력 저장·판매** 사업모델 개발·실증

[2-3] 산업생태계 복원 및 미래시장 대비한 핵심기술 확보

□ (제조) RPS, 경쟁입찰 등 **제도개편을** 통한 **태양광 산업생태계 복원**

○ RPS 경쟁입찰 평가 개선 등 셀·모듈社의 **가격경쟁력, 판로확보** 지원

○ 低**탄소제품 사용유인이** 있는 **경쟁입찰시장** 진입 유도(융자사업 등 연계)

□ (기술) **'26년 탠덤셀 상용화, ' 30년 효율 35%** 달성 → 경쟁력 확보

○ 경쟁국 대비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적 R&D**(1,050억원 既투자)

○ 정책협의체 통한 **기술애로 해소,** 공동활용시설 등 **성능·공정 테스트 지원**

* 차세대 태양전지 조기 상용화 TF('24.1월~), 태양광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24.3월~)

□ (투자)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대응 및 **안보**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3] 새로운 시장에 맞는 제도 개편

[3-1] 정부 주도의 체계적 보급을 위한 RPS 제도 개편



□ 정부의 신규설비 보급 목표량에 대해 매년 원별로 입찰

○ 정부는 가격·비가격 지표*로 평가하여 입찰용량 내에서 설비 선정

* 비가격 지표 : 현재 정부입찰 평가로 반영 중인 요소들을 포함하여 평가

○ 낙찰 설비는 응찰한 가격으로 장기(20년) 고정가(/kWh) 계약

○ 일정규모 이하 설비의 시장진입에 대해 별도 경로 마련(선택권 부여 등)

[3-2] PPA 활성화(RE100 등)를 다각도로 지원, 시장 조성 추진

□ (PPA활성화) 제도개선을 통한 PPA 거래 활성화, 재생e 공급 확대

○ (녹색프리미엄) 원별(태양광·풍력 등) 구매허용 등 거래 편의 제고

* 발전원 세부정보 제공 및 중장기 구매를 위한 다년도(1→3년) 입찰제 도입('24.下)

○ (규제) PPA 거래 촉진을 위한 PPA 용량기준(1MW) 등 규제 완화

* ①PPA 요금정산 다양화, ②사전신고 기한(2개월전) 완화, ③PPA 초과발전량 REC 재판매 허용 등

○ (자가설비) 주택, 산단 등 미활용 자가설비의 별도 인증체계 마련

* 정부주도의 발전량 관리 및 인증서 발급, 별도 거래시장 운영

○ (공급확대) 근본적으로는 RPS 제도 개편을 통한 수요경합 해소*

* (예) 年 태양광 보급목표 4GW 경우, PPA 입찰로 1GW 계약시, 정부입찰은 3GW 추진

□ (지원) 금융·인센티브 등 자발적 재생e 민간 투자에 대한 지원 강화

○ (금융·펀드) PPA 설비대상 저리융자 지원, '재생e 펀드'* 중점 투자

* 녹색프리미엄 재원(3년, 0.2조)과 민간 매칭자금(3년, 0.6조)을 합쳐 0.8조 규모로 조성

Ⅱ. 정부부처 주요 정책동향

⇨ **(기대효과) 보급확대, 계통·공급망** 안정, 효율성 등 기대

❶ (보급) 정부의 직접적 시장신호 제공으로 **안정적 보급목표 달성** 용이

* (現) 발전량 단위 의무 부과, 원별 구분 無 → (改) 원별 보급목표를 고려한 설비용량 입찰

❷ (계통·공급망) **안정적 계통운영**과 재생e **국내 제조기반** 강화

* 계통여건·공급망 등을 고려한 재생e 설비의 선제적 진입 관리

❸ (발전사업자) 원활한 PF, **안정적인 투자비 회수** 가능

* 사업자는 SMP·REC 가격과 무관하게 20년간 고정가격으로 판매

❹ (일반국민) 재생e를 **안정적 비용**으로 조달, 국민 전기요금 부담 완화*

* 연료가격 급등시에도 고정가격 지급, 가격경쟁 등을 통해 가격인하를 유인

❺ (재생e 수요기업) RPS와 경합 없이 **안정적·저비용**으로 재생e 구매

※ 하반기, 국회·이해관계자·전문가와의 협의 및 공론화 개시

○ (인센티브) PPA 계약불이행에 대비한 예측가능성 확보 지원* 등

* PPA는 RPS 판매 대비 사적계약에 따른 불안정성 → 발전사는 PPA 계약 회피 또는 高가격 요구

○ (기타) 재생e 등 무탄소에너지(CFE) 설비투자에 대한 추가 지원 검토

□ (시장 조성) (초기)공공-민간 협업下PPA 중개시장 → (장기)민간주도 시장

○ 초기 시장은 공공(입찰대행)-민간(수요발굴) 협업, 「PPA 중개시장」 개설

* 정부가 민간수요 물량을 의뢰받아 통합 입찰 후 거래 중개('24.下~)

○ 중장기적으로 민간주도의 「자발적 재생e 거래시장」(가칭) 조성 추진

* (민간 운영기관) ①물량조사(수요기업), ②입찰방식(최저가낙찰), ③입찰대상(태양광, 육상풍력) 결정

* (지원기관) PPA 제도 개선(거래소), 재생e 사용 인증(에공단), 계통연계 검토 등 지원

[3] 해외 시장 진출 지원

□ 최근 4년간 총 20.4GW(41건), 143억불 수주 성과 (주요기업 조사 결과)

○ 태양광 18.2GW(28건, 88.1억불), 풍력 2.1GW(7건, 55.8억불)

⇨ 향후 중동, 유럽 등의 태양광 중심으로 수주 확대 전망

□ 민관합동 지원체계 구축 및 맞춤형 진출 지원방안 마련 추진

○ (체계) 「재생e 해외진출 협의회」(가칭) 구성 · 운영, 원스톱 지원

* (역할) ❶입찰정보 공유, ❷국내기업 비즈니스 매칭, ❸진출 애로 해소
(구성) 민간·공공 개발·발전사, 제조기업, 수출금융·수주지원기관, 연구기관, 정부 등

○ (사업발굴) 정부간 G2G 협력을 활용, Top-Down식 대규모 사업 발굴

– 정부간 협력*을 시작으로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 발굴

* 주요국과의 산업에너지委, 협력 MOU, 각료급 면담, 고위급 외교 등

○ (맞춤형 지원) 해외협력 프로그램* 연계, 진출국 특성 맞춤형 지원

* 개도국의 에너지 정책 수립지원, 온실가스 국외감축사업 등

– 진출국 특성과 우수 국내기술을 결합* → 중동 등 주력시장 진출

* (예) (UAE 등 중동) 대규모 태양광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 → (한국) 그린수소 수입

Ⅱ. 정부부처 주요 정책동향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소관부서 : 에너지수소산업과)

○ 윤석열 정부 초반 RE100 정책 폐기 및 온실가스 배출량 및 탄소중립 목표를 하향하여 재생에너지 정책의 혼선을 야기하였음

○ 최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24.5.16)을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재생에너지 친화적인 정책이 처음 발표됐음

○ 구체적으로 해상풍력은 정부가 입지발굴, 주민협의·인허가 지원 등을 지원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하고, 과도기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며, 태양광은 전력계통·주민수용성 등이 양호한 산단·영농형을 중심으로 공공시범사업 등 입지 발굴과 규제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전북자치도 신재생에너지는 전국 설비용량의 15.6%('23년 연말 기준)로 2번째, 발전량은 전국 대비 17.9%('22년 연말 기준)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또한 재생에너지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하여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운영 지원,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구축,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구축, 생재생 연계 ESS 안정성평가센터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30년까지 고창·부안 2.46GW, 군산 1.6GW 등의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될 예정으로 전북자치도는 군산항 6부두 또는 7부두를 해상풍력 배후항만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물동량 산출 용역 등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고, 항만기본계획 반영에 나설 예정임

○ 전북자치도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 및 제도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여 태양광 및 해상풍력 발전을 통한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발맞춰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4.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농림축산식품부)

◇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 발표

1 추진배경

□ 저출산·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 심화가 국가 성장잠재력 저하 초래, **지역소멸 대응이 국가적 아젠다로 부각**

○ **농촌지역 소멸현상이 더욱 심각**하고, 농업생산 위기, 농촌공동체 해체 및 인접 도시 연쇄적 쇠퇴 등 **국가적 영향을 미치므로 세심한 대응 필요**

* 농촌 읍·면 인구는 '22년 961만명에서 '50년 845만 명으로 감소(약 12%↓), 총인구('22대비 '50년 약 9% ↓)보다 가파른 감소세 전망

□ 한편, 스마트기술 발달 및 라이프 스타일 변화 등으로 **정주, 창업, 휴양의 공간으로서 농촌의 잠재력이 새롭게 조명**

○ 쾌적한 환경, 도시대비 저렴한 비용 등으로 **농촌 창업**이 증가하고, 다양한 목적의 **귀촌, 농촌관광, 워케이션 수요** 증가

⇒ 농촌의 잠재적 가치와 국민적 기대를 바탕으로 **농촌소멸 위기 완화 및 농업·농촌정책 전환 추진**

2 추진방향

□ 농촌소멸 대응을 위해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을 모토로 **3대 공간 전환 추진**

○ 농업 생산과 인구 유지를 위한 공간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기회의 장**으로 전환, **사람·기업·농촌자원이 융복합**되는 구조 형성

① 청년층, 혁신가, 기업가, 농업인 등이 모이는 「**창의적 공간**」

② 농촌공간 테스트 베드화 등 농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공간**」

③ 주거·산업·서비스 등이 집적화되고 도시와 농촌이 연계된 「**네트워크 공간**」

□ **농촌공간계획**을 플랫폼으로 새로운 농촌을 계획하고 지역주민 등 **민간 역량 활용 극대화**, 관련 **제도 및 규제 혁신**

3 비전 및 전략

비전

국민 모두에게 열린 살고, 일하고, 쉬는 새로운 농촌

목표

◇ 농촌 청년인구 22% 유지 : ('23) 21.4% → ('27) 22.0

◇ 농촌지역 생활인구 · 관계인구 늘리기

전략

◇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대전환

전략1	전략2	전략3
청년 등 창업 기회 및 농촌 자원 활용을 확대하여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농촌 체류·교류 공간 및 도농 협력 강화를 통한 **생활인구 · 관계인구 창출**	주민·민간 협력과 디지털 기술 등 활용하여 **농촌지역 삶의질 혁신**

원칙

자율, 연대 · 협력, 융복합, 규제혁신

세부과제

1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 **청년, 혁신가, 기업 등 경제 기회 창출**
  - 청년농 및 다양한 농촌 창업 지원
  - 스마트농촌 리빙랩
- **농촌경제 및 Agribiz+ 혁신 모델 구축**
  -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
  - 농촌형 기회발전특구, 농·산지 활용 제고
- **농촌경제 및 Agribiz+ 활성화 기반 조성**
  - 농촌창업 네트워크 활성화
  - 자원정보 등 농촌경제 지원 체계 정비

2 생활인구 · 관계인구 창출

- **4도3촌 라이프를 위한 제3의 공간 조성**
  - 농촌 체류형쉼터 도입 및 체험농원 조성
  - 농촌빈집 활용 공간 재생
- **농촌 · 산촌 관광 활성화**
  - 공유형 숲오피스·치유관광 활성화
  - 마을단위 관광자원 개발, 농촌관광 품질 제고
- **다양한 인재와 농촌과의 관계 강화**
  - 농촌 3대 은행 등 정보 제공 확대
  - 백만 농촌 서포터즈, 기업 등 농촌기여 촉진

3 농촌지역 삶의질 혁신

- **주거 · 일자리 · 서비스가 갖추어진 공간 조성**
  - 재생활성화지역 등 농촌공간계획 수립
  - 지역 주도 주민협정 도입 및 통합지원
- **농촌 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고**
  - 공공병원 지원 강화, 농촌 왕진버스 등
  - 농촌돌봄마을,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 **농촌 교육 · 문화 서비스 다양화**
  - 지속가능한 농촌학교 우수사례 확산
  - 농촌공동체 협력 교육서비스 다양화
-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 자립적 공동체, 스마트기술 활용 등
  - 농촌자원 연계 민간역량 활용 활성화

추진기반

농촌공간계획, 농촌소멸위험지수, 농촌소멸대응특별위원회

4 추진방안

1. 농촌공간 및 자원활용 극대화를 통한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 **농촌형 비즈니스 및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Agribiz⁺)을 활성화하고, 농촌형 기회발전특구 도입 및 농지·산지 활용 입지수요 충족**

□ 청년, 혁신가, 기업 등을 위한 경제 기회 창출

○ (청년농) 안정적 영농 진입에 필요한 **농지·자금** 등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전문농업인으로 성장***을 위한 **교육·자금 등 지원 강화**

* CEO양성과정('24: 280명), 영파머스펀드('24: 200억원), 우수후계농자금('24: 500명)

○ (농촌창업) 청년들의 다양한 **농촌형 비즈니스*** **확산**을 위해 교육, 실증 등 복합공간 갖춘 **시·군별 '농촌청년 창업 콤플렉스(Complex)' 구축**

- 자원조사부터 창업자금·컨설팅 및 보금자리주택 등 종합 지원

* 로컬푸드, 농촌관광, 마을 브랜드 등 농촌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 (창업·혁신 기업) **기술 실증 희망기업** 대상 마을 공유자원 등 농촌공간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스마트농촌 리빙랩'** 추진

□ 농촌경제 및 Agribiz⁺ 혁신 모델 구축 및 기반 조성

○ (농산업) 원료조달, 제조·가공 등 **농업 전후방 산업(Agribiz⁺) 기반을 연계·집적화**한 **시·군 단위 '농산업 혁신벨트' 구축**

○ (민간투자) 농촌 소멸고위험지역에 적용가능한 **읍·면 단위 농촌형 기회발전특구 도입** 및 **입지 규제 완화** 등 농촌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 (농지·산지) **자투리 농업진흥지역**(3ha↓) **단계적 해제**(전국 2.1만ha 추정) 및 지정 목적을 상실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3.6천ha 추정)

-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 평균경사도(25도 이하→30), 표고(산 높이 50% 미만→60), 입목축적(시군 평균 150% 이하→180) 등

○ (네트워크) 창업·혁신 아이디어 확산을 위한 **민간 자율 네트워크 활성화** 및 특산물·문화·유휴시설 등 **지역자원 정보 통합 안내**

2. 농촌 경제·체험·거주 기반 마련으로 생활인구 · 관계인구 창출

◈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및 농촌빈집 재생을 통한 4도3촌 라이프 확산 및 민관협력에 의한 워케이션 · 체류형관광 활성화

□ 4도3촌 라이프 확산을 위한 제3의 공간 조성

○ (체류형 쉼터 등) 주말체험영농 등을 위한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농지법」 개정)

- 거주공간, 농장, 체험프로그램 등을 함께 갖춘 **농촌 살아보기 체험 농원 조성**

○ (빈집활용) 지역, 대상 등 **빈집 활용 숙박업 실증특례 확대*** 및 **매매 가능한 농촌빈집 정보와 민간 플랫폼 연계 등**으로 거래 활성화

* ❶지역 확대(5개도→ 전국), ❷대상 확대(50채→ 500), ❸영업일 수 제한(300일) 폐지 등

-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및 **기업·지자체 합동 농촌빈집 재생 프로젝트 등** 농촌 빈집을 도시-농촌 교류공간으로 조성

* 농촌빈집의 체계적 관리·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25)

□ 농촌 · 산촌 관광 활성화

○ (워케이션·치유관광) **공유형 숲오피스 조성** 등 워케이션 활성화 및 치유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 등 **치유산업 발전방안*** **마련**('24)

* 치유농업 시설 및 관련 농업·농촌 자원 연계, 지역사회와 네트워크 구축 등

○ (체류형관광) 민간의 아이디어와 자본투자를 결합한 특색있는 농 · 산촌 **체류형 관광프로그램 개발 · 확대**

* 외식·지역개발 기업 등과 지자체 공동으로 지역 미식벨트와 연계한 마을단위 관광자원 개발, 민간자본 활용 동·서 횡단 장거리 숲길 조성 등

○ (서비스품질) **농촌민박 규모 등 운영 요건 개선** 및 농촌체험마을 시설 · 서비스 등급제 활성화 등 **숙박 서비스·안전성 제고 지원**

* 위생·안전 점검 컨설팅, 객실·시설 등급 평가, 우수 사업장 인센티브 제공 등

□ 다양한 인재와 농촌과의 관계 강화

○ (정보제공) 농촌에 관심 있는 도시민 등 대상으로 **빈집, 농지, 일자리 등 정보제공**을 위한 **「농촌 3대은행」 운영**

* '빈집은행'을 통한 빈집정보 제공 및 '농지은행'은 농지 매입·임대 지원, '재능은행'은 도시민 등 재능 활용 지원

○ (가치공유) **백만 농촌 서포터즈 육성** 및 **전국민 1주일 농촌 살아보기** 등 세대간·도농간 연계 및 농업·농촌 가치 확산

○ (기여·협력) 기업들의 ESG 경영의무 기조 반영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및 **농촌소멸 대응* 활용, 지역농협 등**의 **도농상생 사례 확산**

* 농촌 교육·장학사업, 주민 복지 증진, 농촌개발 및 활성화, 민간기업과 지역 협력사업 등

3. 관계부처 협업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농촌지역 삶의질 혁신

◈ 어디서나 삶에 불편이 없도록 농촌공간계획을 통한 생활공간 재구조화 및 주민주도·민간협력·스마트기술 활용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 주거, 일자리, 서비스가 갖추어진 공간 조성

○ (공간 재구조화) 139개 시·군별 3개 내외의 **재생활성화지역 설정** 및 **삶에 불편 없는 생활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농촌공간계획 수립

○ (지역주도계획) **주민제안 등을 반영**한 지자체 자율 계획수립 및 계획에 따른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위한 **농촌협약 제도 본격 추진**

*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타부처 사업, 지자체 사업, 민간 투자 등 포함하여 계획 수립

□ 농촌 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고

○ (공공병원) 농촌지역 **거점 공공병원 시설·장비 지원 및 의료인력 보강**

○ (농촌형의료)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운영 및 **농촌 의료·돌봄 거점 마을* 육성,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지원 확대** 등 의료 접근성 제고

* 복지시설, 농장, 주민교류센터 등에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제공

□ 농촌 교육·문화 서비스 다양화

○ (농촌학교) **농촌유학 활성화*** **기반** 등 지원 체계 구축 및 **지역 특성**에 적합한 **농촌학교 운영 모델 확산**

* (기존) 농촌유학센터 중심 → (개선) 가족체류형, 홈스테이형 등 수요자 맞춤형 확대

○ (공동체협력) 유아 돌봄·평생교육 시설 확보 등 **읍·면 초등학교 시설 복합화 지원*** 및 **농촌체험시설**과 **늘봄학교 연계·협력 확대**

*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에 학교복합시설 1개 이상 설치 목표('23~'27)

- 유휴시설 활용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농촌주민 참여 확대 추진

□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 (주민주도) **농촌주민 생활돌봄공동체 등**('24: 130개)을 통한 **부족한 서비스 직접 제공, 민간협력** 등 지역 여건 고려한 서비스 전달체계 확산

* 반찬나눔 활동, 셀프 빨래방 운영, 집수리업체 연계 주거환경 개선 등

○ (스마트기술 활용) 주민 수요를 반영한 **주문형 셔틀버스 등 수요응답형 운송 서비스** 추진, ICT 기반 **스마트커뮤니티 센터*** **구축**

* 보건기관과 마을을 ICT 기반 지능형 서비스로 연결하여 돌봄, 생활 서비스 등 제공

○ (민간협력) 유휴시설 등 **농촌자원을 연계**하여 **민간역량 활용 활성화**

5 추진 기반

□ (농촌소멸대응 플랫폼) 재생활성화지역, 특화지구, 서비스 전달체계 등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한 **중앙·지자체 계획 수립**

* 국가 기본방침('24) 및 139개 시·군 기본계획 수립('25~)

□ (제도기반) **읍·면 인구구조, 농업·농촌경제 지표** 등을 바탕으로 **농촌소멸위험도 세분화**하는 방안 검토

ㅇ 광역 단위 (가칭)**농촌센터(Rural Planning Center)**의 단계적 설립 유도

□ (범정부 추진체계) **농어업인 삶의 질 계획**(21개 부처·청 참여)을 **소멸 대응 중심**으로 전환하고, 범부처 협력을 위한 **농촌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6 과제별 추진 일정

추진 과제	일정	소관부처
1.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1 청년, 혁신가, 기업 등의 창업 기회 창출		
ㅇ 청년의 영농 창업 지원 강화	'24.上	농식품부
ㅇ 청년의 다양한 농촌 창업 지원	'25.上	농식품부
ㅇ 농촌 창업·혁신 기업 성장 지원	'24.上	농식품부
2 농촌경제 및 Agribiz⁺ 혁신 모델 구축		
ㅇ 농산업 혁신 벨트 조성	'25.上	농식품부
ㅇ 농촌형 기회발전특구 도입	'24.下	농식품부
ㅇ 농지·산지 입지 수요 충족	'24.下	농식품부·산림청
3 농촌경제 및 Agribiz⁺ 활성화 기반 조성		
ㅇ 농촌 창업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창업붐 조성	'24.上	농식품부
ㅇ 농촌자원 활용을 위한 정보 네트워크 등 구축	'25.上	농식품부
ㅇ 농촌경제 지원 체계 정비	'24.下	농식품부
2.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1 4도3촌 라이프를 위한 제3의 공간 조성		
ㅇ 농촌지역 체류형 쉼터 및 살아보기 체험농원 등 도입	'24.下	농식품부·산림청
ㅇ 농촌빈집 정비·거래·관리 등 활용 활성화	'24.上	농식품부
ㅇ 도시-농촌 교류공간 조성을 위한 농촌빈집 재생	'25.上	농식품부
2 농촌·산촌 관광 활성화		
ㅇ 농·산촌 워케이션 및 치유 관광 활성화	'24.上	농식품부 산림청·농진청
ㅇ 농·산촌 체류형 관광프로그램 개발 확대	'25.上	농식품부·산림청
ㅇ 농촌관광 서비스 품질 제고	'25.上	농식품부
3 다양한 인재와 농촌과의 관계 강화		
ㅇ 도시민 등을 위한 농촌정보 제공 확대	'24.下	농식품부
ㅇ 미래 세대 및 전 국민 대상 농업농촌 가치 공유	'25.上	농식품부·농협
ㅇ 기업, 단체 등 민간의 농촌기여·협력 촉진	'24.上	농식품부
3. 농촌 삶의질 혁신		
1 주거·일자리·서비스가 갖추어진 공간 조성		
ㅇ 언제 어디서나 삶에 불편이 없도록 농촌 생활공간 재구조화	'24.上	농식품부
ㅇ 지역 스스로 주도하는 농촌공간계획 수립 및 통합 지원	'24.上	농식품부
2 농촌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개선		
ㅇ 농촌에 이용가능한 병의원 시설·인력 지원 강화	'24.上	복지부
ㅇ 농촌 의료분야 민간협력·방문 서비스 등 활성화	'24.上	농식품부·복지부
ㅇ 농촌주민 등을 위한 특화된 돌봄·의료 서비스 제공	'25.上	농식품부
3 농촌 교육·문화 서비스 다양화		
ㅇ 농촌지역 특성에 적합한 학교 운영 체제 구축	'24.下	농식품부
ㅇ 농촌공동체 협력 강화를 통한 교육·문화 서비스 다양화	'25.上	농식품부·교육부
4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ㅇ 농촌주민 자조·자립 기반의 서비스 공급	'24.上	농식품부
ㅇ 스마트기술 활용을 통한 돌봄·복지·교육 서비스 확충	'24.上	농식품부
ㅇ 유휴시설 등 농촌자원 활용한 민간역량 시너지 창출	'25.上	농식품부

붙 임1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 인포그래픽





전략 1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 청년 등 창업 기회 및 농촌자원 활용 확대



전략 2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 농촌 체류·교류 공간 및 프로그램 활성화



전략 3 농촌지역 삶의질 향상

» 주민·민간 협력과 디지털 기술 활용

1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청년, 혁신가, 기업 등 창업 기회 창출



- 청년농 및 다양한 농촌 창업 지원
- 스마트농촌 리빙랩 프로젝트

농촌경제 및 Agribiz⁺ 혁신 모델 구축



-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
- 농촌형 기회발전특구
- 농·산지 활용 제고

농촌경제 및 Agribiz⁺ 활성화 기반 조성



- 농촌창업 네트워크 활성화
- 자원정보 등 농촌경제 지원 체계 정비

2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4도3촌 라이프를 위한 제3의 공간 조성



-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및 체험농원 조성
- 농촌빈집 활용 공간 재생

농촌·산촌 관광 활성화



- 공유형 숲오피스·치유관광 활성화
- 마을단위 관광자원 개발, 농촌관광 품질 제고

다양한 인재와 농촌과의 관계 강화



- 농촌 3대 은행 등 정보 제공 확대
- 백만 농촌 서포터즈, 기업 등 농촌기여 촉진

3 농촌지역 삶의 질 혁신



주거·일자리·서비스가 갖추어진 공간 조성

- 재생활성화지역 등 농촌공간계획 수립
- 지역 주도 주민협정 도입 및 통합지원



농촌 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고

- 공공병원 지원 강화, 농촌 왕진버스 등
- 농촌돌봄마을,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농촌 교육 서비스 질 및 접근성 제고

- 지속가능한 농촌학교 우수사례 확산
- 농촌공동체 협력 교육서비스 다양화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 자립적 공동체, 스마트기술 활용 등
- 농촌자원 연계 민간역량 활용 활성화

5. 지방공사 타법인 출자한도 확대 (행정안전부)

◇ **지방공사의 출자(투자) 가능액 상향으로 지역 내 대규모 사업의 마중물 역할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1 관계규정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2

2 추진배경

○ 지자체(대구, 전남) 및 지방공사(인천도시공사, 경북개발공사 등)의 지속적인 건의를 통한 정책 반영 요구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한도 확대

3 주요내용

○ 현재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 가능 한도**가 **일률적으로 자본금의 10%** → **최대 자본금의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24.6.13.)

○ 출자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방공사의 **부채비율**에 **따라**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 차등 적용**

부채비율	0%이상 ~ 100%미만	100%이상 ~ 200%미만	200%이상
출자한도	자본금의 50%	자본금의 25%	자본금의 10% (현행)

※ 공사의 부채비율과 자본금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산정

○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자사업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

- 지방공사는 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하며, 6월 13일부터는 전문기관의 요건도 강화하여 **출자 규모 5억 이상**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기관*에 **출자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함

* 지방행정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재정공제회 / 5억 미만은 시·도 연구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23.12.12.)

○ 또한 행정안전부는 매년 1회 실시하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성이 큰 출자사업에 대해 경영진단을 하고, 출자금 회수 등 경영 개선 명령 등 실시 예정 (2024년 경영평가 편람에 반영)

《 지방공사 타법인 출자한도 상향 주요내용 》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출자기관 : 전북개발공사]

○ '23년 기준, **공사의 부채비율은 142%**임 (전년대비 2.5%p 증가)

(단위: 백만원)

구 분 \ 연 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부채 ①	430,884	365,814	379,324	474,764	480,505
부채비율(%)①/②	142.1	108.6	111.5	139.5	**142**
자본 ②	303,265	336,851	340,053	340,311	338,347

○ '22년, 행안부는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 · 운영을 통해 '유형별 부채감축목표제'(목표연도 및 매년 총 부채비율 감축비율 설정)를 시행하는 등, 지방공공기관의 부채를 철저히 관리할 것을 요구

*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 대상 : 부채규모가 1천억원 이상이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

○ 향후 전북개발공사의 부채관리 목표를 살펴보면, '23년 자본금 기준 대비 '27년 **부채 비율이 200%**를 넘어서는 **부채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이는 신규사업 발굴 및 시행에 따른 자산규모 확대를 염두해 둔 것으로 보이나, 현재의 자본 수준을 고려했을 때, **목표의 재설정**을 통한 **하향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전국 도시개발공사의 **부채관리 목표**는 대부분 **유지 및 감소**를 목표로 설정되어 있음

○ 전북개발공사는 '23년 9월 도의회로부터 출자동의 받은 500억 중 '24년 5월 200억원의 출자금 법인등기가 완료됨에 따라, 부채비율이 142% → 134%로 하락하여 재무건전성 개선 효과도 바랄 수 있게 됨

○ 지방공사의 부채비율에 따라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가 차등 적용되는바, 향후 지속적인 부채관리를 통한 지방공사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 및 신규사업 추진을 통해 수익구조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6.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교육부)

◇ **교육부의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정책 체감도가 낮고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한 교내 업무 경감, 학교 밖 업무 이관, 학교 업무 효율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Ⅰ. 추진 배경

○ 교육환경 변화(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AI 디지털 교과서 등)에 맞춰 학생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 교육 및 공교육의 혁신적 변화 필요

○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경쟁력 강화

○ 행정업무 경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 체감도는 낮아 경감 과제를 상시 발굴·개선하고 교육행정기관의 학교 지원 강화

Ⅱ. 추진 경과

○ 시·도교육청 및 교원, 행정직, 공무직 등 학교 현장 의견 수렴

- ('23. 6~) 시도교육청 담당자 정책실행팀 구성·운영
- ('23.10~11) 직군별(전문가, 교원, 일반직, 공무직) 협의회 운영
- ('24. 2.23) 부총리 주재 교원·행정직 대상 제13차 간담회 실시

○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 ('23. 7~12) 학교 행정업무경감 및 효율화 방안 정책 연구(충북교육청, 교총)
- ('24. 3~5) 학교지원 전담기구 기능 및 역할 분석 연구(KE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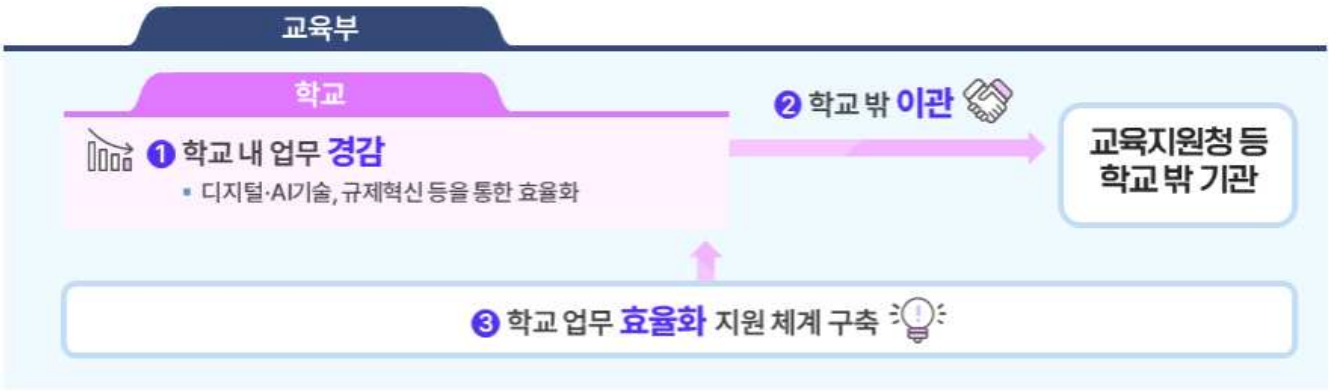
○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 마련

- ('24. 4~) 시안 마련, 학교 행정업무 경감 정책실행팀 및 관련 부서 검토
- ('24. 5.21)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 ('24. 5. 4주) 학교 행정업무 경감 관련 정책토론회 및 정책발표

Ⅲ. 추진 방향

목표 교사가 이끄는 교실 혁명을 위한 교육 전념 여건 조성

방향 ❶ 교내 업무경감 + ❷ 학교 밖 이관 + ❸ 업무 효율화 지원



1 경감 | 학교 내 교직원의 수업·행정 업무 부담 최소화

-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학생 출결, 공문 관리** 등 업무 간소화
- **에듀테크 개발**을 통한 교사의 수업 준비 및 행정업무 부담 경감
- **학교 내 각종 위원회를 대폭 정비**하여 관련 업무 부담 완화

2 이관 | 행정기관 기능 강화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 부담 완화

- 학교 밖 시설 및 미취학 관리,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업무체계 개선**
- 교육지원청 **학교지원 전담기구 법제화 및 예산·인력 지원 확대**

3 효율화 | 학교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지원 체계 개편

- 학교 행정업무 경감 과제 **'상시 발굴·개선·소통 체계'** 구축
- 정책별 **업무부담 완화 방안 마련 의무화** 등 사전 점검체계 신설
- 교육부-교육청-교원단체 간 **협업 네트워크 강화 및 우수사례 확산**

Ⅳ. 주요 추진 과제

1. [경감] 학교 업무 간소화로 교직원 부담 완화

○ 단순 반복 업무의 온라인 시스템 처리 강화

- (현황) 4세대 나이스, K-에듀파인 고도화 등 **AI·디지털 기술에 기반하여 업무처리를 지원** 중이나, 여전히 **현장은 다수의 행정업무를 수기로 처리**
- (개선방안)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출결**, 공문접수 등 행정업무 처리 지원

○ 비전문가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 지원 강화

- (현황) AI·디지털 발전에 따른 다양한 기술이 도입되고 있으나, **사용자의 역량에 따라 활용 격차가 발생**하는 등 지원 요청 증가
- (개선방안) 디지털 튜터* 등 지원으로 **교사의 수업 준비 부담 완화**, 디지털 기기·인력 지원 확대로 **디지털 기반 업무처리 강화**

  * ('25) 1,200명 → ('27) 1,800명

○ 업무별 담당자를 위한 행정업무 처리 매뉴얼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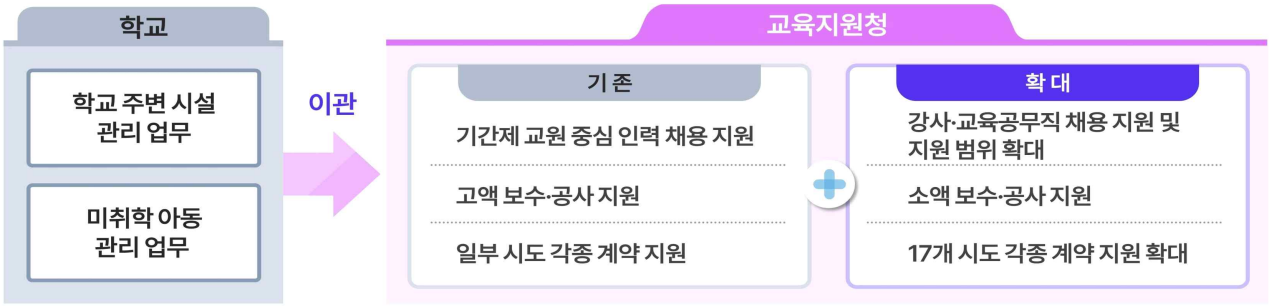
- (현황) **업무 초임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사업 등에 대한 **세부 설명자료가 부족**하여 **개인별 업무 기피 증가** 및 **업무 수행편차 심화**
- (개선방안) 시도교육청별 업무 매뉴얼을 분야별로 「함께 학교」* 플랫폼에 제공하고, 우수 매뉴얼 확산, 저경력 교사 대상 멘토링 사업 등 확대('24. 하반기~)

  * 교육 3주체(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온라인 소통 공간

○ 위원회 통합·폐지로 행사 준비·참석 부담 완화

- (현황) 학교 내 **약 30개의 법정·비법정 위원회 구성·운영** 중이며, **낮은 개최 빈도**에도 구성·운영이 불가피하여 **불필요한 부담 증가**
- (개선방안) 목적·성격이 유사한 비법정위원회를 법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체 여건에 맞게 정비(10개 내외)하고, **법정위원회 역할·기능 내실화 병행 추진**('24.하반기~)

2. [이관] 행정기관 기능 강화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 부담 완화



○ 학교 주변 시설 관련 업무 부담 완화

- (현황) 학교는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 현황 조사·금지행위 방지 등을 위해 순회점검 등을 실시**하고 해당 실적 제출(연 2회)
- (개선방안) 필요한 경우 **자율적 순회점검으로 전환**하고 교육환경 보호구역 설정자인 **교육장 중심으로 대응**('24.하반기~)

○ 미취학아동 소재 확인 업무 체계 개선

- (현황)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학교, 교육(지원)청,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교육(지원)청에 '취학관리 전담기구' 설치('16.)
  - 법령 상 **학교의 1차 출석 독촉, 경과 통보**(관할 읍·면·동, 교육장) **이후**에는 **전담기구에 후속관리 의무가 있음**에도, 교육(지원)청 인력 부족으로 현재 학교에서 모든 절차 진행
- (개선방안) 교육(지원)청 **'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정상적 운영**을 통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 달성 및 **일선 학교의 부담 완화**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사업 절차 개선 및 업무 이관

- (현황) **교육급여**(기초생활보장법), **교육비 지원**(초·중등교육법)은 교육부 장관·교육감 소관이며 **교육청·학교와 함께 일반 지자체에서 공동 수행**

< 교육비 지원 절차 (안) >

신청	접수	소득·재산조사	대상자 결정
학부모 등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시·군·구(행복e음)	교육청·학교

- (개선방안) 사업 개편 및 학교 내 처리 절차 개선을 통해 업무 간소화
  -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을 학생에서 **아동·청소년**(미취학아동, 학교밖 청소년 포함)으로 **확대**하고 복지부 및 일반 지자체로 **이관 추진**
  - (교육비 지원)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시 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다양한 지원 기준**(소득, 이주배경, 다문화 등)에 대하여 **일괄 심사 지원**

○ **교육지원청(학교지원전담기구)의 학교 행정업무 지원 확대**

- (현황) 학교 공통업무 경감을 위한 **교육지원청 학교지원 전담기구**는 **인력·예산 등 여건에 따라 지원 업무의 범위·정도 차이 발생**

※ 전담기구 설치 : ('18년) 1개 교육청(대구) → ('19년) 11개 → ('20년) 13개 → ('21년) 14개 → ('23년) 16개 → ('24년) **17개 교육청, 172개 설치**(대전 신설)

- (개선방안) 학교지원 전담기구의 인력·재정 지원 확대와 병행하여 **업무 지원 범위 단계적 확대 추진** 및 **시도별 지원 격차 해소**('24.하반기~)

○ **학교지원 전담기구 법제화 및 지원 확대**

- (현황) '24년 모든 교육청에 학교지원 전담기구가 설치 완료되었으나, **시도교육청별 자율 설치**하는 비법정 기구로 **지원 편차가 상이**
- (개선방안) 학교지원전담기구 법적 근거 마련(' 24.하반기~) 및 인력·재정 지원 추진

※ 인력은 ('22년) 약 1,200명 → ('24년) 약 1,420명, 특별교부금은 ('22년) 36억 원 → ('24년) 55억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25년부터 시·도교육청의 인력·예산 수요를 신청받아 총액인건비·특별교부금에 최대한 반영 추진

3. [효율화] 행정업무 경감 지원 체계 정비

○ **업무경감 과제 '상시 발굴·개선 체계' 구축**

- (현황) 학교 현장의 다양한 행정업무 갈등에 대해 즉각적인 조정·피드백이 부재하여 구성원 간 갈등은 장기화되고, 업무추진 지연
- (개선방안) 「함께학교」 플랫폼 내 **행정업무 경감 상시소통 채널 구축**('24.하반기~)

○ **교육정책 등 업무부담 사전·사후 점검 체계 신설**

- (현황) **주요 교육정책 발표 시, 학교 업무 가중**으로 이어지나 별도의 경감방안 부재로 교직원 업무가 지속 증가
- (개선방안) **교육정책 수립 시, 학교 행정업무 경감방안 포함을 의무화**('24.하반기~)하고, **사후 점검 체계 구축**

○ **효율적 학내 업무 재배치를 위한 단체협약 개선 및 관리자 리더십 지원**

- (현황) **일부 지역·단체에서 업무 범위와 관련된 협약 사항**으로 인해 업무분장 시 **학교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업무 재배치 곤란**
- (개선방안) 교육부·교육청이 교원·행정직·공무직 등과 단체협약 체결 시, **학교 내 업무 갈등 요소를 사전에 검토 후 협약 체결** 권고

○ **교육부-교육청-교원단체 협업 네트워크 강화 및 우수사례 확산**

- (현황) 학교 현장 여건·요구에 따라 시도별로 학교 행정업무 경감 추진 정도가 상이하여, 시도별 지원 체계 구축 및 우수사례 확산 필요
- (개선방안) **교육부-교육청-교원단체 간 협업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행정업무 경감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추진

Ⅴ. 향후 추진 일정

○ ('24. 5.)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시안) 마련

○ ('24. 상반기)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시안) 시도교육청 협의

○ ('24. 6.) 교원단체 등 학교 구성원 현장 의견수렴 및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 수립

Ⅱ. 정부부처 주요 정책동향

‹‹ 전북자치도교육청 추진현황 ››

[소관부서 : 교육기획과]

○ 도교육청은 지난 5월 23일 수업중심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2024년 교사 행정업무경감 대책’을 발표하였음. 일부 사항은 교육부의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교육부의 경감 방안은 시도교육청 협의 후에 의견수렴을 거쳐 ’24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2024년 1월 신설된 ‘학교업무지원센터’는 7. 1. 인원을 확대(41명 → 107명) 배치할 계획으로 **실질적인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특별교부금 및 목적사업비 증가에 따라 폭증하는 **시설 공사·용역 계약 등 업무, 인력 채용 시 업무 지원 범위 확대**(채용 공고·접수 → 면접, 합격자 발표, 계약) **등 적극적인 학교 업무 경감 및 이관을 위한 상시 과제 발굴 및 검토 필요**

□ 학교업무지원센터 인력 배치 현황 비교

(2024.7.1. 기준)

순	지역	변경 前 ('24.1.1)	**변경 後 (24.7.1)**	계	순	지역	변경 前 ('24.1.1)	**변경 後 (24.7.1)**	계
1	전주	7	**9**	16	8	진안	2	**3**	5
2	군산	4	**7**	11	9	무주	2	**3**	5
3	익산	4	**7**	11	10	장수	2	**3**	5
4	정읍	3	**5**	8	11	임실	2	**3**	5
5	남원	3	**5**	8	12	순창	2	**3**	5
6	김제	3	**5**	8	13	고창	2	**4**	6
7	완주	3	**5**	8	14	부안	2	**4**	6
계		27	**43**	70	계		14	**23**	37

Ⅲ. 지자체 추진 사업 사례

Ⅲ. 지자체 추진 사업 사례

1.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장학생 지원사업 (충청북도)

◇ '22년부터 시행된 공공간호사 장학사업을 통하여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간호사 수급을 안정화하여 도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함

1 추진배경

○ 충청북도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지방의료원의 간호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간호사 양성을 추진하고 있음

○ 간호인력의 안정적 확보로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 강화

2 주요내용

○ 장학생 선발개요('24년)

구 분				선발예정 인 원	선발 대상
선발분야	장학금	의무복무	근무지		
간호 장학생	800만원	2년	충주의료원 청주의료원	19명 28명	지원조건을 충족한 간호대학 졸업예정자

※ 공공병원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 및 인재 양성을 위해 2022년부터 장학생 선발을 시행하고 있음

○ 지원조건 (*아래 지원조건 모두 충족자)

- 대학교 간호학과 학과장 추천 재학생
- 대학 졸업 후, 충주의료원에 정규직 간호사로 의무복무 2년 가능자
- 군필자 또는 면제자(남학생)
- 충주(청주)의료원 인사규정에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본 사업과 **유사한 장학사업**(의무복무)에 수혜를 받지 않은 자
- **공고일 현재 충북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도민 및 도민의 자녀**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과거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도민 및 도민의 자녀

※ **거주 미충족자** : 전입 및 2년 이상 거주 확약서 지원가능

Ⅲ. 지자체 추진 사업 사례

○ 의무복무 관련

- 장학생은 장학금을 받은 후, 2년간 지방의료원 의무복무를 이행하여야 함

  ※ 졸업전 4학년생 대상 장학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조건에 따라 장학금 1회 지급

- 장학생은 2회에 한하여 의무복무 유예가 가능하며, 1회에 1년 이내로 신청 가능

  ※ 졸업전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휴학, 복무기간 중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무가 어려운 경우, 그 밖에 의료원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의무복무가 불가능한 경우(질병, 변심 등) 장학금 전액을 반환 조치하며, 의무복무 중 중도 퇴사하는 경우 근무율에 따른 환수 금액 적용

  ※ 반환금 = (지급받은 장학금 + 법정이자) × $\frac{\text{의무복무기간} - \text{근무한기간}}{\text{의무복무기간}}$

  ⇨ 월 단위로 적용하되 근무기간이 15일 이상은 1개월로 환산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관계부서 : 보건의료과, 교육협력추진단)

○ '공공간호사 장학사업'은 2021년 충청남도에서 지자체 최초 도입되었는데, 2024년 현재 충청북도, 인천광역시에서 동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충남도에서 첫 공공간호사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는 도민 또는 도민 자녀, 도내 고교 졸업(예정)자를 '공공간호사 특별전형'으로 모집하여 양성함. 지역대학(혜전대, 신성대)와 충남인재육성재단, 지방의료원(서산, 홍성) 간 업무협약을 통해, 간호 인재들을 의료원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4년 동안 근무하도록 하였음

cf. 충남도 연도별 장학금 지급대상 학생 및 소요재정 규모(안)
2022년 20명 1억 6000만원, 2024년 100명 8억원, 2026년 160명 12억 8000만원(예정)

○ 대도시의 간호인력 밀집과 공공병원의 간호사 이직률이 높은 상황으로, 지역 간 간호인력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음. 지역인재육성재단과 연계한 장학사업을 통해 지방의료기관의 간호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 참고할 만한 정책이라 사료됨.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시도가 필요함

<표1> '24년 공공간호사 장학생 모집 비교

구분	충청남도	충청북도	인천광역시
장학금	1인당 최대 600만원	1인당 최대 800만원	1인당 최대 1천만원
의무복부	2년	2년	2년
선발인원	홍성의료원(10명) 서산의료원(10명)	충주의료원(19명) 청주의료원(28명)	인천의료원(20명)
지원조건	- '24년도 간호학과 졸업예정자 중 지도교수 추천을 받은 자 - 대학졸업 후, 의무복무 2년 가능자 - 충남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도민 및 도민의 자녀 (*거주 미충족자:전입 및 2년이상 거주확약서 지원 가능) * '21년 지자체 최초 도입	- '24년도 간호학과 4학년 재학생 - 대학 졸업 후, 의무복무 2년 가능자 - 충북에 1년이상 계속 거주 중인 도민 및 도민의 자녀 (*거주 미충족자:전입 및 2년 이상 거주확약서 지원 가능)	- '25년도 간호학과 졸업예정자 - 전 학년 평점 평균 B학점(3.0) 이상인 자 - 대학 졸업 후, 의무복무 2년 가능자 - 인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자 (*거주 미충족자:전입 및 2년이상 거주확약서 지원 가능)



<'23년 인천시 청년정책으로 소개된 '공공간호사 장학사업' 사례>

2.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 (서울특별시)

◇ **장기전세주택Ⅱ·신혼부부 안심주택 등 주거 문제로 출산을 고민하는 신혼 부부가 없도록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 공간 공급**

1 추진배경

○ 저출생 문제와 높은 주택 비용으로 인한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자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 추진

-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 공급**, 이후 **'26년부터 매년 4,000호씩** 추가 공급 ('23년 기준, 신혼부부 3만 6천쌍, 약 10% 해당)

○ 이를 통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을 망설이는 신혼부부를 위해 아이 낳을 '결심'과 '확신'을 심어주고, **'집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장기전세주택Ⅱ

※ 기존 장기전세주택은 다자녀 가정에 가점을 주어 입주 기회를 제공, 20년간 거주 보장

○ 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장기전세주택Ⅱ'를 새롭게 도입, **무자녀 신혼부부**는 물론 **예비부부**도 입주, **자녀 출산시 거주기간 연장** 및 **우선 매수청구권** 등 혜택 부여 ('26년까지 총 2,396호 공급 예정)

- 입주 후 아이 1명 출산 시 **최장 거주기간 10년 → 20년**
- **2명 출산시** 시세보다 **10%, 3명 출산시 20% 저렴하게 매입 가능**

*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에 300호 우선 공급 예정, 7월 중 모집공고 시행

○ 입주대상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로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이면 신청 가능

○ 중산층과 **실수요자를 위해** 입주를 위한 **소득 기준 완화**

-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맞벌이가구 180%), 전용면적 **60㎡ 초과**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 (맞벌이가구 200%)이며, **소유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과 **자동차** (3,708만원 이하) 기준도 충족해야 가능

- 또한 자녀를 출산하면 **재계약**(2년 단위)시 적용되는 **소득 기준도 완화**(20%p)해 소득 증가에 따른 퇴거 위험 부담 감소

  * 2자녀 출산 시 소득기준 40%p, 3자녀 이상 출산 시 60%p 완화

《 '24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

구 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월평균소득 120%	649만원	863만원	989.8만원	1,053만원
월평균소득 150%	812만원	1,079만원	1,237만원	1,316만원
월평균소득 180%	974만원	1,295만원	1,484만원	1,579만원
월평균소득 200%	1,083만원	1,439만원	1,649만원	1,755만원

○ 입주자는 유자녀와 무자녀 가구를 구분(해당단지 공급물량 50%씩 배정 예정)해 선정하고 자녀가 있는 가구엔 방 2개 이상의 넓은 평형을 우선 배정

○ 또한, 자녀 수에 따른 가점대신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무주택 기간 ▲청약저축 가입기간 등을 반영, 높은 점수순으로 선정 후 동점자는 추첨

《 입주자 선정시 가점 기준 》

구 분	5점	4점	3점	2점	1점
① 공급신청자의 서울특별시 연속 거주기간 (만19세 이후)	10년 이상	7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② 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 (만 30세이후 또는 혼인신고일중 앞선 날짜)	10년 이상	7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③ 공급신청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부부합산 가능)	10년 이상	7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 완화와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 연장은 **국토교통부 승인사항**으로 현재 **협의 중**이며, 장기전세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도 **입주 후 출산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국토교통부에 요청 중

3 신혼부부 안심주택

○ '26년까지 2,000호 공급 예정

-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별 50m이내 건립 예정
- 6월 시범대상지 모집 및 7월 중 조례 · 운영기준 등 마련 이후 행정절차 돌입

○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대상 70% 임대(민간 · 공공),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 **출산시 우선 양도권과 매수청구권** 부여

○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시세의 70 ~ 85%, 공공임대주택은 주변시세 50% 수준 (주택 세대수의 약 20% 이내)으로 공급

○ 가장 큰 특징은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과 서비스 제공

- 신혼부부 특성과 세대원 구성 변화를 반영 알파룸 · 자녀방 등 다양한 구조 · 형태를 갖추고, 생활편의를 위한 냉장고 · 세탁기 · 인덕션 · 에어컨 등 고급형 빌트인 가전도 설치

* 공동 육아나눔터, 서울형 키즈카페 등 맞춤형 육아시설 설치 의무화

○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 대상 파격적 지원**

- 기존 청년안심주택은 100% 임대 (민간 · 공공)로 공급되지만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70%는 임대** (민간 · 공공), 나머지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 **사업성이 확보**된다는 점이 **특징**
- 또한 각종 심의를 통합 및 간소화해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 신속한 추진도 지원
- 이외 최근 금리 인상, 원자재값 폭등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 건설자금 **최대 240억원에 대한 이자 차액도 2%** (대출금리 3.5% 이상 시) **지원**

* 240억원 대출시 사업자는 연간 **최대 4억 8천만원의 이자 절감** 가능

‹‹ 시사점 ››

○ 현재 도내에는 신혼부부 및 청년을 대상으로한 임대보증금 지원 및 보증보험료 지원 등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주택공급 차원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주거 문제는 출산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출산을 고려하기 위해 주거 환경이 좋아야 한다는 판단에서 서울시는 중산층까지 포함하도록 소득 기준을 완화, 서울시의 높은 주거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정책을 시행

○ 무자녀 신혼부부에게 10년간 거주를 보장하고, 추가 10년 거주를 위해 출산시 혜택을 제공하여,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거주 기간이 연장될 뿐만 아니라 더 넓은 평형의 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고, 같은 단지 내 넓은 평수로 이동하거나, 단지 내에 적합한 주택이 없을 경우 주변 단지로 이동도 가능하도록 제도 마련

○ 이와 같은 정책은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원하는 신혼부부에게 출산을 장려함과 동시에 혜택을 제공하여 출산율을 높이는데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도내에서는 자체 사업인 임대보증금 지원 및 보증보험료 지원뿐 아니라 신혼·예비부부를 위한 적절하고 지속적인 주택공급과 정책을 통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함

3.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전라남도)

◇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을 통한 여성농업인 농작업 개선 및 농기계 지원으로 e-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1 추진 목적

○ 비료·작물 등의 운반을 위한 농기계 지원으로 효율적 농작업 도모

○ 전기동력운반차 지원으로 미세먼지 감축하여 환경친화적 생산기반 조성

○ 전남에서 생산하는 농기계 지원으로 전남 e-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2 추진방침

○ 여성농업인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여성농 우선 지원

○ 도내 공장에서 생산하는 기업의 기종으로 지원하고, 기종별 안정성·성능 및 제조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 등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

○ 농기계 안전사고에 따른 농업인의 신체상·재산상의 경제적 손실 보상을 위해 지원받은 기종은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의무

3 지원계획

○ 기간/사업량 : 2024. 1.~12. / 800대

○ '24년 사 업 비

(단위:백만원)

총사업비 (100%)	재원별			비 고
	도비(15%)	시군비(55%)	자담(30%)	
4,400	660	2,420	1,320	

○ 지원대상 : 전남도 내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하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경작하는 여성농업인 등

○ 지원내용 : 구입비의 일부 지원(최저 3,500천원~최대 4,000천원)

- 기종가격이 높아 보조금 한도 초과 시 자부담 추가 부담해 구입

4 사업추진체계

① 지원 제품

○ 전라남도에 공장을 두고 생산한 기업의 제품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농업기계 검정에 합격한 제품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 및 일반 농기계'로 등록된 전기 승용형 농업용 동력운반차

* 생산(공급) 업체는 A/S를 2년간 보장하는 내용의 사후관리이행보증서 또는 품질보증서 발행해야 하며, A/S가 정상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경우 차년도 사업을 제한할 수 있음

②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

○ 지원사업 희망자는 사업 신청서를(별지 제1호) 시·군에 제출

○ 시·군에서는「농정 심의회」등을 통해 대상자 선정

③ 보조금 지원

○ 기종별 보조금 차등 지원

* 기종별 안정성·성능·지역경제 기여도 등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원

○ 1농가 1대 공급 원칙

○ 시·군에서는 사업 참여 희망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기종, 규격, 가격 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와 보조 지원액을 확정

○ 농기계를 공급한 업체는 구입 농업인에게 사전에 농기계 작동법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법을 반드시 지도·교육한 후 교육확인서를 농업인에게 발급하고, 농업인은 교육확인서를 시·군에 제출(별지 제5호)

○ 시·군에서는 보조금 지급 시 사전에 농기계 규격 등 제품 이상 여부와 자부담 납부, 농기계 안전교육 확인서,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증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 지원 대상 농기계(별표1호)와 공급된 농기계의 재원이 일치하는지 확인

* 시·군은 사업대상자가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을 위임할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 가능

④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집행

- 시장·군수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자부담 우선 집행 등 절차 이행

- 시장·군수는 사업 완료 후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도에 정산 보고('25. 1.까지/별지 제3호)

⑤ 사후관리

○ 시·군에서는 공급대장(별지 제2호) 및 사후관리대장(별지 제4호)을 작성해 내부결재 받아 보관하고 농기계 구입 확인, 활용 및 관리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 시·군 담당자 변경 시 전산으로 작성한 공급·사후관리대장 인수인계 철저

○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 철저

* 사후관리 기간 내 노후화 및 사망.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농 시에는 시장·군수 승인을 받아 처분 또는 관리전환하고 도지사에게 변경사실 통지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관계부서 : 농생명축산식품국)

○ 전라남도에서는 '20년까지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하였으나 '21년부터 사업을 확대 세분화하여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사업량 확대),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신규사업),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 지원'(신규사업)을 실시하여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에 대한 편의장비를 지원하고 있음

○ 또한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을 통하여 전라남도의 e-모빌리티 사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매년 많은 생산업체가 모집공고에 참여하여 매년 5개 업체가 선정되어 전기운반차를 생산하고 있음

○ 이를 토대로 영광 e-모빌리티 산업육성 사업도 병행하여 산업생태계 확산 및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전북자치도에서는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24년 지원규모 -1866대)하여 농작업편의장비 8종 중 1종을 지원하고 있으나, 구입비용을 500천원내로 지원하고 있음

○ 전북자치도에서도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성·고령 농업인에 대한 편의장비 지원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및 농업인들이 효율적이고 안전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 및 지원대상 확대를 적극 검토하여야 함

○ 또한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법을 통하여 농생명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바, 고령화·여초현상이 심화된 농촌현실을 고려, 여성농민의 효율적 농작업 도모를 위한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량 구매보조 사업을 통하여 농기계 업체를 유치하고, 농기계 클러스터 및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을 위한 마중물 삼아 농기계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붙 임1 전기운반차 지원 예시 차량







4. 여성 1인 사업장, 안심 비상벨 사업 시행(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내 여성 1인 사업장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여성 안심 비상벨' 사업을 시행함

1 추진배경

○ 카페, 미용실, 네일숍 등 혼자 일하는 제주특별자체도내 여성 1인 사업장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함

2 주요내용

○ (지원내용) 실내보안 서비스 장치 : 12개월 지원

- 양방향 모션 CCTV 설치(실시간 영상확인/양방향 소통가능)
- 비상벨 설치(위급상황 발생 시 비상 출동 지원)

○ (지원대상) 제주도내 여성 1인 사업장 50개소

-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 와이파이 설치 사업장
- 1인 운영 매장 지원 가능

  * 기존 CCTV 설치 매장은 별도 문의 필요

○ (신청기간) 2024. 5. 2.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사)서귀포YWCA홈페이지의 Y뉴스 게시판 서식 참고하여 이메일 제출

○ (선정방법)

- 서류 접수 후 사업장 현장 확인
- 선정위원회 통해 선정 후 개별연락

3 기대효과

○ 여성 1인 사업장의 범죄 발생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임

Ⅲ. 지자체 추진 사업 사례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관계부서 : 여성가족과)

○ 서울시도 제주특별자치도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안심경광등' 사업은 신청개시(6.3.) 다음 날 5,000세트 전량 조기 마감 되었음. 서울시는 안심경광등 사업의 지원확대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음

※ 긴급상황 발생 시 사건처리 순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벨을 누르면 가게 외부의 점멸등**이 **켜지**면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자치구 관제센터**에서 위치 및 인근 CCTV 등을 확인 후 센터 내에 상주하는 **경찰이 가게 인근 순찰차 등에 출동 요청**을 하게 됨

《 서울시 1인점포 '안심경광등' 이미지 》

안심경광등	비상벨	스마트허브	사인보드
			

○ 군산시에서는 '24년 1인 점포를 대상으로 'CCTV 및 안심벨 설치사업'을 120개 점포에 대해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시행 후 종료 예정

○ 전북자치도는 '23년에 1인 가구 주거 안전 방문 지킴이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482가구를 지원(CCTV 설치 96가구, 안심장비 386가구)하였으나 1인 사업장에 안심 비상벨 지원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음

○ 1인가 주거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1인 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 여부를 파악하고 타지역 사례 등을 참조하여 전북자치도에 적용여부 검토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사)서귀포YWCA

범죄예방 및 안전을 위한

여성안심 비상벨 지원사업



24시간 여성 안심 비상벨 설치를 통해 범죄예방 및 안전에 취약한 제주도내 여성 1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여성 안심 비상벨'을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내용

실내 보안 서비스 장비 설치 - 12개월 지원

1. 양방향 모션 CCTV 설치(실시간 영상 확인 / 양방향 소통 가능)
2. 비상벨 설치(위급상황 발생시 비상 출동 지원)

● 지원대상

제주도내 여성 1인 사업장

- 사업자 등록증 제출 필수
- 와이파이 설치 사업장
- 1인 운영 매장 지원 가능

*기존 CCTV설치 매장은 별도 문의 필요

● 신청기간

2024. 05. 02 ~ 부터 예산소진시 까지

● 선정방법

- 서류 접수 후 사업장 현장 확인
-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후 개별 연락

● 신청방법

(사)서귀포YWCA홈페이지(sgpoywca.or.kr)
Y뉴스 게시판 서식 참고
이메일 제출 : sgpoywca@hanmail.net

(사)서귀포YWCA T. 064)762-1400 www.sgpoywca.or.kr

5. 경로당 어르신 점심 지원 확대(주 3일→5일)(서울시)

◇ 경로당 양곡비, 부식비, 중식도우미 지원
◇ 연말까지 80% 경로당 중식 5일 제공…여건 보완 후 전 경로당 단계적 확대

1 추진배경

○ 어르신들의 충분한 영양을 섭취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적 활동 강화 효과를 기대

○ 중식 제공으로 어르신의 경로당 찾는 빈도 증가로 소통을 통한 사회적 교류와 활동 촉진으로 우울증 예방 및 심리적 안정감에 도움

2 주요내용

○ (지원내용)

- 기존 경로당 별 연간 8포(1포 20kg)에서 12포로 상향
- 부족한 2일치 부식비와 경로당 중식도우미 인건비 추가 투입 예정

○ (시행시기) ‘24. 7.부터

《 서울시 경로당 중식 제공현황 》

(단위 : 개소)

구분	경로당 총 수	중식제공 경로당	중식 미제공 경로당
계수	3,489	3,090	399

○ (향후 계획)

- 3,489개의 경로당에 대한 중식확대 운영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2,792개(80%)의 경로당에서 주 5일 중식제공 확대를 희망하고, 697개(20%)는 확대를 희망하지 않는 상황임

《 *중식확대 운영 수요조사 결과 》

(단위 : 개소)

중식 확대희망 경로당 총 수	현재 중식 주 5회 제공	현재 중식 주 5회 미만	현재 중식 미제공	비고
2,792	816	1,718	258	

- 중식확대를 희망하지 않는 697개소에 대한 현장 상황 파악 및 별도의 지원 방안 마련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식사 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관계부서 : 노인복지과)

○ 정부는 올해 5월 1일 전국 경로당에 주 5일 식사 제공 추진을 발표하였으나, 구체적인 지원책은 발표하지 않은 상황임. 전북자치도는 재원의 부족으로 도내 모든 경로당에 주 5일 식사 제공을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임. 시군 매칭을 통한 재원 방안 마련 검토 중

※ 참고 : 2024년 전북자치도 경로당 지원 사업*

《 *2024년 경로당 운영지원은 다음과 같음 》

(단위 : 개소/천원)

사업명	시설종류	사업량	예산액(도비)	비고
합계		7,109	2,693,148	
경로당 운영지원(자체)	경로당	6,899	2,649,216	- 도내 모든 경로당
	미신고 경로당	210	43,932	- 2021년 6월말 기준 시군 관리 시설에 한함

《 *2024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예산 》

구분	2024년 예산총액	국고 보조율	비고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17,056백만원	국비 50% 도비 10%	- 냉방비 : 165천원 x 2개월 - 난방비 : 400천원 x 5개월 - 양곡비 : 20kg x 8포 * 동 산출기준에서 집행계수(90%) 적용

참고 1 2024년도 경로당 운영지원사업 예산

(단위 : 천원)

단체명	사업량	합계	지방비					기타
			소계	도비		시군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합 계	**7,109**	13,465,740	13,465,740	2,693,148	20%	10,772,594	80%	
전주시	686	1,297,892	1,297,892	259,579	20%	1,038,314	80%	
군산시	549	1,049,710	1,049,710	209,942	20%	839,768	80%	
익산시	781	1,423,482	1,423,482	284,697	20%	1,138,786	80%	
정읍시	728	1,382,028	1,382,028	276,406	20%	1,105,622	80%	
남원시	494	948,480	948,480	189,696	20%	758,784	80%	
김제시	658	1,241,510	1,241,510	248,302	20%	993,208	80%	
완주군	502	922,762	922,762	184,552	20%	738,210	80%	
진안군	334	641,280	641,280	128,256	20%	513,024	80%	
무주군	272	520,492	520,492	104,098	20%	416,394	80%	
장수군	281	537,772	537,772	107,554	20%	430,218	80%	
임실군	349	670,080	670,080	134,016	20%	536,064	80%	
순창군	376	721,920	721,920	144,384	20%	577,536	80%	
고창군	614	1,178,880	1,178,880	235,776	20%	943,104	80%	
부안군	485	929,452	929,452	185,890	20%	743,562	80%	

※ 2023년 부터 도비 경로당 운영지원사업 모든 신고 경로당 지원(미신고 경로당은 기존과 동일)

참고 2 2024년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 예산

(단위 : 천원)

단체명	사업량	합계	국비		지방비					기타
			금액	비율	소계	도비		시군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합 계	6,899	17,056,000	8,528,000	50%	8,528,000	1,705,600	10%	6,822,400	40%	
전주시	664	1,641,570	820,785	50%	820,785	164,157	10%	656,628	40%	
군산시	544	1,344,900	672,450	50%	672,450	134,490	10%	537,960	40%	
익산시	694	1,715,736	857,868	50%	857,868	171,574	10%	686,294	40%	
정읍시	710	1,755,292	877,646	50%	877,646	175,529	10%	702,117	40%	
남원시	494	1,221,288	610,644	50%	610,644	122,129	10%	488,515	40%	
김제시	633	1,564,930	782,465	50%	782,465	156,493	10%	625,972	40%	
완주군	455	1,124,870	562,435	50%	562,435	112,487	10%	449,948	40%	
진안군	334	825,730	412,865	50%	412,865	82,573	10%	330,292	40%	
무주군	270	667,505	333,753	50%	333,752	66,750	10%	267,002	40%	
장수군	279	689,756	344,878	50%	344,878	68,976	10%	275,902	40%	
임실군	349	862,812	431,406	50%	431,406	86,281	10%	345,125	40%	
순창군	376	929,562	464,781	50%	464,781	92,956	10%	371,825	40%	
고창군	614	1,517,957	758,978	50%	758,979	151,796	10%	607,183	40%	
부안군	483	1,194,092	597,046	50%	597,046	119,409	10%	477,637	40%	

Ⅳ.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Ⅳ.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1. 초고령사회 노인 대상 식사 지원 현황 및 과제(국회입법조사처)

<< 연구요약 >>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경로당 이용 노인을 대상으로 주 5일 식사를 제공하기로 하였음. 노인에게 있어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영양가 있는 식사 한 끼'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며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경로당은 좋은 서비스 공간이 될 수 있음. 다만, 경로당 지원 수준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고, 시설 및 인력 측면에서 식사 준비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경로당 이용의 유연성 제고, 지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국비 지원 검토 및 식사준비 보완 대책이 요구됨

□ 경로당 주 5일 식사 제공 추진

○ 정부는 지난 5월 1일부터 전국 경로당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협업으로 주 5일 식사 제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음

○ 경로당마다 시설이나 운영 상황이 다르고,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수준에도 차이가 있어 단기간에 지원 확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인 건강 확보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의문이 제기됨

□ 노인 대상 식사 지원의 중요성

○ 정부의 경로당 식사 지원 확대 목적은 초고령사회에서 가급적 노인들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의료·요양 비용을 절감하고 노년기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중 남자 4.4%, 여자 5.5%가 식품불안정(Food Insecurity)을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1인 노인 가구에서 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노인의 저영양은 노쇠(Frailty)를 초래하여 장애나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높임

○ 혼자 식사를 하는 노인은 불안 및 우울 증상이 상대적으로 높고, 식품 불안정성 또한 우울증 유병확률을 증가시키는 요소임. 지역사회에서 함께 하는 식사는 노인에게 정서적·사회적 교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독거노인에 대한 식사배달 사업은 홀로 사는 노인의 안부를 확인하고, 고독사를 예방하는 역할도 한다. OECD 국가 노인자살률 1위인 우리나라에서 노인의 정신건강은 중요한 과제임

□ 노인 대상 식사 지원 서비스 현황

(1) 경로당 식사 지원 현황

○ 2024년 4월 기준 전국 경로당 수는 총 68,658개소이며, 그 중 85.3%인 58,558개소에서 주 7일 중 평균 3.4회 식사를 제공하고 있음

○ 2023년 기준으로 전국 경로당에 지원되는 예산은 [표 1]과 같이 국고보조금 763억 원, 지방비 1,532억 원 수준임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금액이 상이함. 다만, 노인 인구 대비 경로당 수와 지방비 지원 금액의 수준을 고려해볼 때 전남·북, 충남·북, 경북 등 농촌 지역의 경우 경로당이 주요한 노인복지시설로 기능하면서도 지원 수준이 열악함을 알 수 있음

[표 1] 경로당 운영비 등 예산 지원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구분	경로당 수 (22.12월말)	노인인구 1천명 당 수	예산 지원	
			국고보조금	지방비
합계	68,220	7	76,323	153,208
서울	3,554	2	1,025	14,926
부산	2,367	3	2,840	4,385
대구	1,560	4	1,765	5,966
인천	1,539	3	1,860	5,108
광주	1,370	6	1,634	5,109
대전	840	3	993	5,132
울산	841	5	992	1,657
세종	508	12	647	1,688
경기	10,053	5	10,351	19,199
강원	3,276	9	3,815	14,681
충북	4,231	13	5,225	7,398
충남	5,871	13	7,143	5,236
전북	6,820	17	8,161	13,394
전남	9,179	21	10,736	14,186
경북	8,213	13	9,926	22,320
경남	7,534	12	8,699	6,325
제주	464	4	510	6,498

※ 주: 국고보조금은 2023년도 기준(냉난방비 및 양곡비), 노인인구는 2023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지방비는 지자체 취합 자료
※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2024.5.)

(2) 경로당 외 노인 대상 식사 지원 서비스

○ 경로당 외에 노인을 대상으로 식사를 지원하는 서비스로는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과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등이 있음

○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 독거 노인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일정한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어 경로식당의 경우 일반 노인들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음

(3) 해외 사례

○ 미국 각 주에서는 다양한 식사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는데, 뉴욕주에서는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지역 생산 신선식품 구입 쿠폰을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시장에 갈 수 있는 무료 버스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카고시는 60세 이상 노인들이 무료로 과일, 야채 및 단백질 공급원을 가져갈 수 있는 'Nourish Chicago Pantry'를 운영함

○ 일본은 독거노인이나 노인세대에 대해 '생활지원형 배식서비스'와 '식사자립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사회적 기업이 지역 내 작은 매장을 설치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식사배달, 식당 운영, 고령자 맞춤형 식재료 판매를 하기도 함

○ 영국, 독일 등 주요국 모두 소득이 아닌 욕구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거동이 가능한 노인에 대해서는 회합 식사나 음식물 구매 지원 등 참여적·능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경로당 식사지원 개선 사항

○ 지역 간 형평성을 담보한 수준의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음. 정부는 양곡 및 냉·난방비의 집행 잔액을 부식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련 규정을 개선할 계획이지만, 이미 2023년 국비 집행률 잠정치가 92.2%에 이르고 있으며 노인들이 부식비 마련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까지 절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

○ 지역 공동급식소를 활용한 전문적인 음식 조리·배달, 이동식 급식소 운영, 지역 식당·가게와의 연계를 통한 배식 등 음식 준비 관련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하여 식사의 질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 ‘선심’ 아닌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투자

○ 노년기에 영양을 갖춘 식사가 가져다주는 신체적·정신적 이점을 고려할 때, 노인 대상 식사 지원이 ‘선심성 공약’이 아닌 초고령사회에서도 가급적 많은 노인이 건강을 유지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투자라는 인식 전환이 요청됨

○ 소득 기준이 아닌 실질적인 식사 도움 필요 여부를 기준으로 실비 이용자까지 식사 지원 서비스의 대상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2.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지역별 B/C기준 차등화 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22.12.)

‹‹ 연구요약 ››

◇ 지방재정투자사업에서의 균형발전 분석을 위해 국가사업과 차별화된 방법론 개발 필요
◇ B/C (비용대비 편익)의 지역별 격차 존재 → 특정지역에 대한 정책적 고려 필요
◇ 지역별 지역발전지수를 기준으로 B/C 추정, 비수도권의 수도권 대비 B/C기준 조정 필요

□ 분석배경

○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지역낙후도 순위**를 표준점수화하고 그 값을 AHP (분석적 계층화 방법)에 적용하여 사업시행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KDI의 PIMAC*과 달리,

* PIMAC (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 LIMAC*은 **타당성조사**시 복수의 **지역발전지표**를 지역별 **단순 나열하여 서술**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을 뿐, 이를 종합점수화하여 의사결정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지는 못하고 있음**

* LIMAC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Local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 이에, LIMAC에서 수행하는 타당성조사에서 **실질적 균형발전 분석**이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코자 하며,

○ **지역의 발전정도**를 고려하여 **지역별 B/C기준의 차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① 지방재정투자사업의 경우, 국가사업에 비해 **B/C가 더 낮은** 것으로 분석

· (도로사업 전체 B/C 평균) KDI 예비타당성조사 (0.87) > LIMAC 타당성조사 (0.54)

· (B/C가 1.0이상으로 분석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38%) > 타당성조사 (8%)

※ 국가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가 낮은 사업은 AHP 통과가 어려움 확인

※ 지방재정투자사업은 실제 투자심사 통과율 측면에서 시도별 격차 뚜렷하지 않음

* 지방재정투자사업은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위원회가 분리되어 있는 의사결정체를 보유한 것에 기인

② 인구감소지역이나 군지역 등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는 **투자심사 통과율**이 낮을 뿐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추진하는 재정투자사업 **건수 자체가 감소**

· ('17~'21년 기준) 사업건수 및 투자심사 통과율을 비교하였음

Ⅲ.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표1] <인구감소지역의 투자심사 통과율>

구 분	사업건수		비중(%)		통과건수		통과율(%)	
	인구감소지역	이외지역	인구감소지역	이외지역	인구감소지역	이외지역	인구감소지역	이외지역
2013년	31	171	15.3	84.7	28	145	90.3	84.8
2014년	87	276	24.0	76.0	72	216	82.8	78.3
2015년	56	232	19.4	80.6	41	190	73.2	81.9
2016년	61	275	18.2	81.8	53	223	86.9	81.1
2017년	65	359	15.3	84.7	46	304	70.8	84.7
2018년	31	231	11.8	88.2	17	199	54.8	86.1
2019년	58	324	15.2	84.8	50	304	86.2	93.8
2020년	54	281	16.1	83.9	43	246	79.6	87.5
2021년	49	317	13.4	86.6	40	257	81.6	81.1
계	642	3270	16.4	83.6	513	2805	79.9	85.8
2013~16년			19.2	80.8			83.3	81.5
2017~21년			14.4	85.6			74.6	86.7

[표2] <도내 투자심사 통과율 : 지역 간 격차 (시부, 군부)>

구 분	사업건수		비중(%)		통과건수		통과율(%)	
	군부	시부	군부	시부	군부	시부	군부	시부
2013년	28	123	13.9	60.9	24	108	85.7	87.8
2014년	91	199	25.1	54.8	77	149	84.6	74.9
2015년	57	146	19.8	50.7	44	117	77.2	80.1
2016년	70	176	20.8	52.4	60	145	85.7	82.4
2017년	64	264	15.1	62.3	45	217	70.3	82.2
2018년	29	154	11.1	58.8	16	130	55.2	84.4
2019년	47	220	12.3	57.6	42	206	89.4	93.6
2020년	55	188	16.4	56.1	46	161	83.6	85.6
2021년	42	212	11.5	57.9	33	170	78.6	80.2
계	605	2217	15.5	56.7	496	1863	82.0	84.0
2013~16년			19.9	54.7			83.3	81.3
2017~21년			13.3	58.5			75.4	85.2

⇒ [표1] 관련, 사업건수 비중은 '17~'21년 기준 **인구감소지역은 14.4%**인 반면, **이외 지역은 85.6%**를 차지하며, 사업건수 비중이 '13~'16년보다 더 낮아져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재정투자사업 추진이 과거보다 오히려 감소**하였음

⇒ 통과율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은 76.4%**인 반면 **이외 지역은 86.7%**로 12.0%의 격차 발생

⇒ [표2] 관련, 군부는 시부 대비 **사업건수와 통과율이 낮으며**, 인구감소지역의 추이와 동일하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업건수와 통과율 모두 감소** 현상을 나타냄

③ 지역발전지수가 B/C에 미치는 영향, 이에 따라 **지역별 B/C 기준 차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지표를 활용하여 **지역발전수준**을 분석하였음

[표3] <지역발전수준 분석결과 (광역)>

구 분	인구 부문			경제 부문			종합점수 (광역)	순위
	인구 증가율	고령인구 비율	순인구 이동률	경제 성장률	1인당 GRDP	재정 자립도		
세종	0.225	0.118	0.129	0.195	0.087	0.086	0.839	1
경기	0.017	0.096	0.025	0.190	0.056	0.093	0.477	2
서울	0.000	0.072	0.000	0.111	0.089	0.129	0.402	3
울산	0.004	0.107	0.000	0.006	0.196	0.085	0.398	4
충북	0.008	0.053	0.015	0.203	0.081	0.023	0.383	5
제주	0.024	0.071	0.028	0.154	0.037	0.039	0.353	6
인천	0.010	0.092	0.011	0.090	0.034	0.093	0.328	7
충남	0.011	0.042	0.017	0.093	0.136	0.030	0.328	8
광주	0.004	0.087	0.007	0.118	0.014	0.057	0.287	9
대전	0.001	0.088	0.000	0.097	0.019	0.060	0.266	10
부산	0.001	0.046	0.004	0.085	0.016	0.074	0.225	11
대구	0.002	0.069	0.004	0.071	0.000	0.064	0.210	12
강원	0.006	0.031	0.013	0.111	0.034	0.008	0.203	13
경남	0.006	0.061	0.010	0.040	0.049	0.034	0.201	14
전남	0.003	0.000	0.008	0.073	0.087	0.000	0.171	15
경북	0.004	0.021	0.008	0.000	0.083	0.012	0.128	16
전북	**0.002**	**0.023**	**0.006**	**0.054**	**0.022**	**0.005**	**0.112**	**17**

⇒ 인구 및 경제 부문의 세부지표를 모두 반영하여 산정한 종합점수에서 **세종시**가 가장 높은 발전수준(0.839)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경기(0.477), 서울(0.402), 울산(0.398)순이었음

⇒ **전북** (0.112)은 **가장 낮은 발전수준 지역으로 분석**되었으며, 하위 5개 지역은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가 차지하였음

※ (기초단체까지 발전지수를 분석한 결과) 지역발전지수에서 상위 10개 지역은 세종시를 제외할 경우 **모두 수도권 지역**으로, 하위 10개 지역은 모두 경북(6개)과 **전북 (4개)** 지역으로 나타남.

④ 지역별 지역발전지수를 대입하여 B/C값을 추정하였음

* 지역별 B/C의 격차가 존재하고, 지역별 동일한 B/C 기준으로 사업 타당성을 판단할 경우불리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문제로 인식,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B/C 기준을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제하였음

[표4] <지역발전지수에 따른 지역별 B/C 결과>

구 분	시도	시군구수	B/C					
			평균	최대	최소	상위 25%	중위	하위 25%
수도권	서울	25	0.96	1.13	0.90	0.99	0.94	0.93
	인천	10	0.91	1.05	0.82	0.94	0.87	0.86
	경기	31	1.06	1.30	0.93	1.07	1.05	1.01
	소계		1.00	1.30	0.82	1.05	1.00	0.93
비수도권	부산	16	0.81	1.04	0.72	0.82	0.79	0.77
	대구	7	0.80	0.88	0.74	0.81	0.80	0.79
	광주	5	0.86	0.89	0.84	0.87	0.86	0.85
	대전	5	0.84	0.91	0.80	0.85	0.82	0.81
	울산	5	0.95	1.03	0.88	0.98	0.96	0.92
	세종	1	1.57	1.57	1.567	1.57	1.57	1.57
	강원	18	0.78	0.85	0.73	0.80	0.78	0.77
	충북	11	0.91	1.05	0.82	0.95	0.89	0.86
	충남	15	0.87	1.01	0.79	0.89	0.85	0.82
	전북	**14**	**0.68**	**0.78**	**0.63**	**0.70**	**0.68**	**0.66**
	전남	22	0.73	0.83	0.67	0.77	0.72	0.69
	경북	23	0.71	0.81	0.64	0.73	0.69	0.66
	경남	18	0.77	0.88	0.68	0.79	0.75	0.73
	제주	2	0.97	0.98	0.956	0.97	0.97	0.96
	소계		0.79	1.57	0.63			

[표5] <시도별 B/C기준 (안)>

B/C기준	1.00	0.95	0.90	0.85	0.80	0.75	0.70
지 역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울산 제주	충북	광주 대전 충남	부산 대구	전남 경남 강원	전북 경북

⇒ 전반적으로 **수도권과 세종시**는 B/C 1.0 기준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없으며, 충청권은 0.85~0.90으로 양호하게 나타났고,

⇒ 광역시의 경우 광역시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체로 0.80~0.95인 반면,

⇒ 전통적으로 낙후지역으로 알려진 **강원권과 경상권, 전라권은 0.70~0.75로 도출**되어 **수도권 대비 B/C 기준의 조정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도별 B/C기준을 적용하여 경제적 타당성 여부 재판단

· 경제성 확보율 증가 : 7.9% → 12.4% (↑4.5%p)

· 즉, B/C기준 차등화로 기존에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판정된 일부 사업이 **이론적 기준인 1.0**에는 못 미치지만, **해당 지역의 발전정도를 고려**할 때 (해당 지역 내에선)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결국, 제안된 지역별 B/C의 차등화를 **실제 LIMAC의 타당성조사에 적용**할 경우, 해당 지역의 발전정도를 고려할 때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

※ '정책적 분석' 항목으로서의 '지역균형발전 분석'은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다른 여러 지표들을 통해 경제성과 상관없이 균형발전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이라면, 본 연구는 인구가 적고 소득이 낮은 지역에서는 경제성 분석 상의 수요(demand)와 편익(benefit)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임

□ 결론 / 시사점

[결론]

지역별 (특히 비수도권 일부 지역) 인구감소추이와 경제규모, 지역의 발전정도를 고려하여 지방재정사업의 타당성조사의 경제성 분석시 B/C 기준을 차등 적용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충분함.

[시사점]

1. 본 연구는 '경제성'으로 표현되는 B/C의 기준을 지방의 본질적 불리함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론의 하나로 유의미함.
2. 향후 지역발전지수의 고도화 및 B/C의 차등화에 있어 지역뿐 아니라 사업 특성까지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 필요.
3. (전북의 경우) 가장 낮은 지역발전지수를 나타내고 있는 바,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시 경제성 분석에 균형발전의 가치를 고려한 B/C를 차등화하여 평가해줄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겠음.

첨부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 타법 타당성조사와의 비교

구 분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법」 타당성 조사	「건설기술진흥법」 타당성 조사
대상기준	총사업비 500억 이상	총공사비 500억 이상
수행단계	사업계획 수립 이후 (투자심사 이전)	기본계획 수립 이전
분석방법	사업계획 검토 → 기초자료 분석 → 쟁점도출 → 기술적검토 / 비용추정 → 경제성 분석 → 재무성 분석 → 정책적 분석 → 종합결론	기초조사 → 수요예측 → 규모검토 → 비용산정 → 편익추정 → 경제성 분석 → 재무성 분석 → 정책적 분석 → 종합결론
결과활용	• **투자심사를 위한 판단근거**로 활용 • 최종 의사결정 : **투자심사위원회**	• 기본계획 수립시 결과반영 * 혹은 기본계획과 동시수행 • 즉, 사업시행이 확정 또는 전제된 상태에서 해당사업 수행의 최적의 대안을 찾아예산을 절감하는데 활용

구 분	예비타당성 조사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 조사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기준	총사업비 500억 이상 국비 300억 이상	• 총사업비 1,000억 이상 • 국비 및 공공기관 500억 이상
수행단계	사업계획 수립 이후 (투자심사 이전)	사업계획 수립 이후 (투자심사 이전)
분석방법	지방재정법과 분석방법은 큰 틀에서 동일하나, 예타는 타당성 확보 여부 판단을 위한 AHP분석 시행	예타는 AHP분석을, 공공기관은 수익성 분석을 추가수행
결과활용	• 사업시행여부 판단 / 기관 예산편성 활용 • 경제성 분석, 정책적분석(지역균형발전, 특수지표 등)에 대한 AHP분석(AHP≥0.5)을 수행, 그 결과를 기준으로 대상사업 타당성 확보여부 판단	

3. 온누리상품권 사업의 효과와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분석요약 ≫

◇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소비 기반 확충을 위해 도입한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는 계속 증가하여 2024년 5조 원에 달함.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및 할인율은 전통시장 등의 매출 증대 효과, 상품권 종류별 고객차별 효과, 부정유통 유발 효과, 정부 재정부담, 소비왜곡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할인율의 재조정, 부정유통 예방, 충전식카드형상품권 결제금액에 대한 카드수수료 지원 등과 같은 과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충실한 실태조사로 개선방안 마련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야 함

□ 온누리상품권 도입과 경과

○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과 같은 새로운 유통채널의 등장과 소비자 구매행태의 변화로 전통시장 상권이 급격히 위축되었고 매출이 감소하였음

○ 전통시장의 수요 기반 확충 방안을 모색하던 정부는 당시 일부 시장에서만 사용되어 오던 상품권을 전국의 모든 전통시장에서 통용되는 공동 상품권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2009년 7월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였음

○ 온누리상품권의 개별가맹점(이하 '가맹점')이 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 등')의 상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등록해야 함

[표 1] 연도별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 예산 및 발행금액

(단위: 억 원)

연도	예산		발행금액			
	본예산	추경예산	지류	카드형	모바일	계
2019	1,772	-	20,000	8	66	20,074
2020	2,313	2,070	39,000	8	1,479	40,487
2021	2,749	207	28,000	1	3,572	31,573
2022	2,883	-	30,000	560	4,831	35,391
2023	2,898	-	12,890	3,963	3,389	20,242
2024(계획)	3,514	-	14,000	26,000	10,000	50,000

※ 주: 선불카드 형태로 발행되던 카드형상품권은 2022년 9월부터 충전식카드형상품권으로 바뀌었다.

※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출자료, 2024.4.17.

[표 2] 2024년도 온누리상품권 발행계획 및 사업비

(단위: 억 원)

종류		발행금액	수수료율	수수료	할인보전금	계
지류	비할인	8,000	2.8%	224	-	224
	5% 할인	6,000		168	300	468
충전식 카드형	5% 할인	17,000	0.42%	71.4	850	921.4
	10% 할인	9,000		37.8	900	937.8
모바일	5% 할인	5,000	1%	50	250	300
	10% 할인	5,000		50	500	550
계		50,000		601.2	2,800	3,401.2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2024.1.

□ 온누리상품권 예산 및 발행 현황

○ 중기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세부사업 '시장경영혁신 지원'의 내역사업 중 하나로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의 예산을 매년 증액하고 있고, 이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발행금액도 커지고 있음

□ 온누리상품권 할인발행의 효과

○ 첫째, '시장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구매력을 증가시켜 가맹점의 매출 증가에 이바지할 수 있음

○ 소비자는 할인발행이 없는 경우와 비교해서 더 많은 소비를 '시장 등'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할인발행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소비행위를 다소나마 왜곡하는 효과를 발생시킴

○ 셋째, 온누리상품권 발행, 판매, 환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과 할인보전금을 정부가 책임짐에 따라 재정부담이 발생함

○ 넷째, 온라인상품권 부정유통은 반칙행위를 하는 가맹점과 소비자가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취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온누리상품권 사업의 형평성, 공평성 및 신뢰성을 낮춤

□ 개선과제

(1) 할인율 조정

○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충전식카드형상품권과 모바일상품권은 5% 할인 상품권뿐만 아니라 10%할인 상품권도 발행하고 있지만, 지류상품권의 경우는 5% 할인상품권만 발행하고 있음

○ 10% 할인 지류상품권을 발행하지 않는 것은 지류상품권의 주 구매층으로 예측되는 저소득 노령층을 비롯한 모바일 약자를 상대적으로 차별하는 결과를 낳음. 이에 따라 상품권 종류별 할인율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류상품권과의 수수료율 차이, 즉 1.8%p와 2.38%p를 고려하여 지류상품권과 충전식카드형상품권 또는 모바일상품권 사이의 할인율 차이를 기존 5%p에서 2%p 정도로 축소·재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2) 부정유통 예방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10월부터 온누리상품권 구입 및 환전과 관련된 의심 거래를 탐지하기 위해 '이상 금융거래 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FDS)'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음

○ FDS를 활용한 적극적인 감시, 가맹점 등록 취소 및 재등록 제한, 과태료 상향 등과 같은 조치를 통해 해결해야 함

(3) 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지원

○ 새로운 종류의 충전식카드형상품권을 도입함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수수료 부담이 완화되고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이 높아졌지만, 가맹점은 다른 온누리상품권에는 없는 수수료, 즉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 온누리상품권 발행의 목적이 '시장 등'의 상인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충전식카드형상품권 결제에 따른 수수료의 일부나 전부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3]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수수료율

구분	연간 매출액	적용 수수료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영세	3억 원 이하	0.5%	0.25%
중소	3~5억 원 이하	1.1%	0.85%
	5~10억 원 이하	1.25%	1.0%
	10~30억 원 이하	1.5%	1.25%

※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2년 1월 31일부터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에 따라 영세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됩니다.」, 2022.1.26.

(4)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조사 실시

○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및 할인율은 '시장 등'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다른 지원정책과의 비교, 행정비용,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함

○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조사는 이러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4. 포털뉴스 시대, 지역신문 활성화 방안(국회입법조사처)

‹‹ 연구요약 ››

◇ 우리나라 뉴스 생태계의 인터넷 포털 의존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역신문은 경영 악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음. 지역신문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해 현행 사업비 지원방식을 직접지원 사업 위주로 하는 등 지역신문 지원 정책을 개선하고, 포털의 지역뉴스 노출 강화를 위한 법·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신문의 자생력을 확보하려는 정부와 민간의 공동 노력이 요구됨

□ 포털뉴스 시대의 뉴스 이용

○ 우리나라의 뉴스 이용은 디지털 뉴스 이용방식이 84%(포털: 69%, 소셜미디어: 15%)로 대부분을 차지함

○ 종이신문의 정기구독률은 2000년 59.8%에서 2010년 29.0%, 2022년에는 6.3%로 큰 폭으로 하락했음

○ 디지털 중심의 유통방식 변화로 인해 인터넷신문 업체는 2019년 2,796개에서 2022년 4,322개로 54.6% 증가했음

○ 인터넷신문의 증가와 정보과잉 및 허위정보 우려 등의 현재 뉴스이용 환경에서 독자의 뉴스 피로도를 줄이고 뉴스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저널리즘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지역신문 현황과 문제점

(1) 지역신문의 현황

○ 종이신문 사업체수가 정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신문 업체의 증가로 인해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전체 신문 사업체 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1] 연도별 신문 사업체 현황(2020~2022년)

(단위: 개)

구 분		2020	2021	2022
신문(지역제외)		806	689	709
인터넷신문		3,594	4,084	4,322
지역신문		678	624	663
	일간	124	125	126
	주간	554	499	537
합계		5,078	5,397	5,694

※ 자료: 한국언론진흥재단, 「2023 신문산업실태조사」, 2023.12, p.21. 및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 2023.9, p.7.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 한편, 지역신문의 매출액은 전체신문 매출액의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 일간신문의 경우 광고수입 비중이 67%로 구독수입 비중(15.2%) 보다 4배 이상 높은 상황임

(2) 지역신문의 문제점 및 입법적 대응

○ 포털 중심의 뉴스 이용 환경에서 지역신문의 대표적 어려움은 기사 노출 감소에 따른 경영 악화 및 디지털 뉴스 활용 인력 부족 등이라 할 수 있음

○ 지역신문이 지역의 정치, 행정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취재를 통해 지방정부를 감시하고 건전한 지역 여론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뉴스의 소외는 뉴스 소비자들인 지역민들의 뉴스 선택권은 물론 지역민의 정치 참여를 제한할 수도 있음

○ 정부는 지역신문 발전과 지원을 위해 2004년에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하 '지역신문법')을 제정하였음. '지역신문법'은 2005년부터 설치·운영되어 오고 있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한 지원은 지역신문의 저널리즘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의 실효성 문제는 계속 제기되어 왔고, 상시법 전환 이후에도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 체계' 구축에 대한 요구는 계속되고 있음

□ 지역신문 지원 정책의 한계

○ 정부의 지역신문 지원은 대부분이 지역신문발전 기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현재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사업은 대부분이 지역신문사의 경영 안정화와 제호 규모의 유지를 위한 지원정책 추진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임

○ 대부분의 지원사업이 발생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등의 간접지원이라 지원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규모도 축소되고 있음

[표 2] 2024년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세부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 지역신문역량지원(내역사업)		4,319
디지털유통 구조개선 관련 사업	ㅇ 취재장비임대지원	1,650
	ㅇ 지역신문제안사업	300
	ㅇ 지역인재인턴프로그램	640
그 외 사업	ㅇ 기획취재지원 등 7개 내내역 사업	1,729
□ 지역공헌활동지원(내역사업)		3,932
합계		8,251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2024.3.14./ 2024.4.22.) 재구성

[표 3] 지역신문발전기금 규모(지출예산 기준)

(단위: 억 원)

구 분	1기 ('05~'07)	2기 ('08~'10)	3기 ('11~'13)	4기 ('14~'16)	5기 ('17~'19)	6기 ('20~'22)	7기 '23	7기 '24
사업비	618	484	335	287	235	256	83	83
기금운영비	17	18	20	19	18	18	6	6
여유자금	337	665	373	55	17	26	10	10
합계	973	1,167	728	360	270	299	98	98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 2023.9, p.33. 및 한국언론진흥재단 제출자료(2024.4.22.) 재구성

□ 포털뉴스 시대의 지역신문 활성화 방안

(1) 지역신문 지원 정책의 개선

○ 첫째, 정부의 지역신문 지원 정책은 디지털 시대의 지역신문 성장 기반 조성을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함

○ 둘째,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중장기 사업 도입이 요구됨

○ 셋째, 현행의 사업비 지원방식을 직접지원 사업 위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포털의 지역뉴스 노출 강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

○ 포털의 뉴스배치에서 위치정보에 기반한 지역 뉴스와 지역 정보의 노출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검토해볼 수 있음. 현재 네이버가 모바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동네 판'을 지역 공간으로 활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임

○ 포털 등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가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지역신문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지역신문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노력 요구

○ 정부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따른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 등을 통해 혁신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정부의 지원 정책 외에 이용자 기반 수익모델을 구축하는 등 지역신문사의 자생적 노력도 요구되며, 지역신문사들의 최신 디지털 기술 지원을 위해 민간 기관들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언론인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인공지능과 일자리의 미래 (국회도서관)

≪ 연구요약 ≫

◇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AI 노출도 및 대체율과 보완성의 역학관계를 분석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구조 전망

□ AI로 인한 일자리 변동

○ AI는 인간의 인지능력을 모방하여 인식, 해석, 행동,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인간과 동등한 지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음. 따라서 AI 및 머신러닝 전문가 등의 일자리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은행원, 단순 반복 업무를 하는 일부 사무직 등은 AI로 대체되는 등 노동시장의 구조가 전반적으로 재편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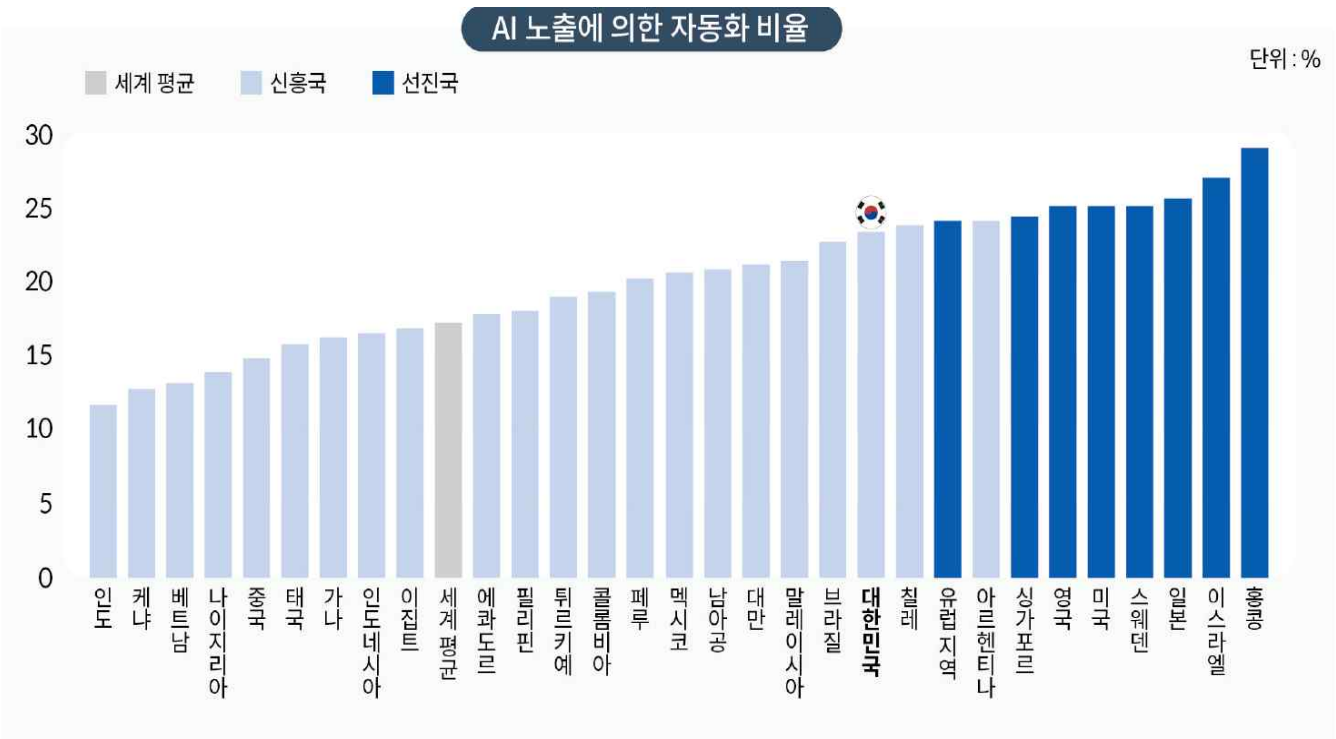
* 자료: World Economic Forum. (2023.5). Future of Jobs Report 2023.

□ 글로벌 AI 노출도

○ AI 노출도는 직업 또는 직무에서 AI 애플리케이션과 인간 업무능력이 중첩되는 정도를 말하며 전 세계 근로자의 약 40%, 선진국의 경우 약 60%가 고노출 직종에 종사하고 있어 노출된 직종 업무의 상당 부분이 AI로 대체될 수 있음

○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는 미국과 유럽의 노동력을 조사한 추정치를 신흥국과 선진국으로 확장하여 AI에 의한 자동화를 추정한 결과 전 세계 일자리의 18%가 AI에 의해 자동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신흥국과 선진국을 포함한 30개국을 대상으로 한 추정치를 보면 홍콩이 가장 높고, 일본이 세 번째, 미국이 다섯 번째, 우리나라는 11번째로 높은 편에 속함. 신흥국은 선진국에 비해 AI 노출도와 자동화 비율이 낮음.



* 자료: Goldman Sachs. (2023.3.26.). The Potentially Large Effec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on Economic Growth.

○ 미국의 AI 노출도는모든 산업 전반에 걸쳐 25%를 보이고 있고, 직종별로 구분해보면, 행정(46%) 및 법률(44%)에서 가장 높고 건설(6%) 및 유지보수(4%)와 같은 노동집약적 분야에서는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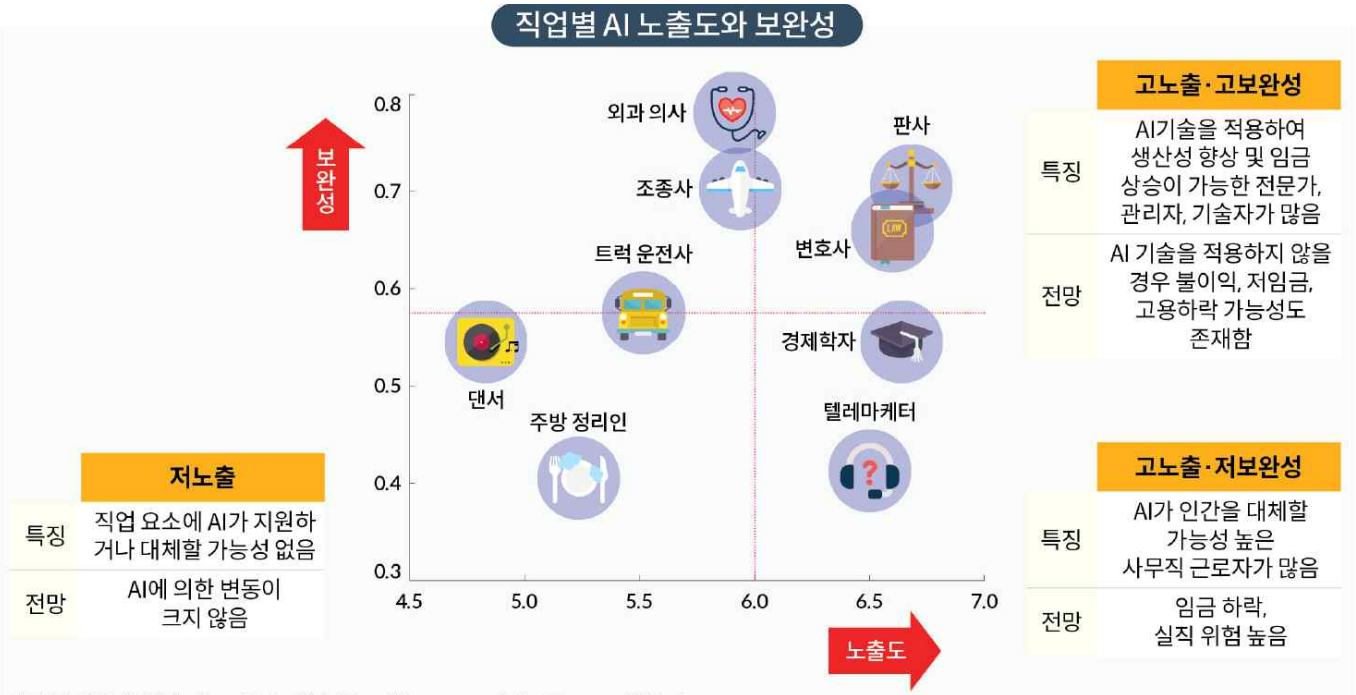
* 자료: Goldman Sachs. (2023.3.26.). The Potentially Large Effec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on Economic Growth.

□ AI 노출도 VS AI 보완성

○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AI 노출도와 AI 보완성의 관계를 통해 전망할 수 있음. AI 보완성이란 AI가 “인간을 대체하지 않고” 인간의 업무를 보완하여 고도화시키는 것을 말하며, “인간의 감독이 필요한 업무에 한하여 AI로 대체” 되는것임.

○ 예를 들어 판사의 경우, AI의 텍스트 분석 발전으로 AI에 많이 노출되어 있지만 현재, 사회에서 검증되지 않은 AI에게 사법 판결을 위임할 가능성이 낮아 AI 보완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여성, 고학력, 젊은층도 AI 노출도가 높아 AI에 의해 업무가 대체되거나 보완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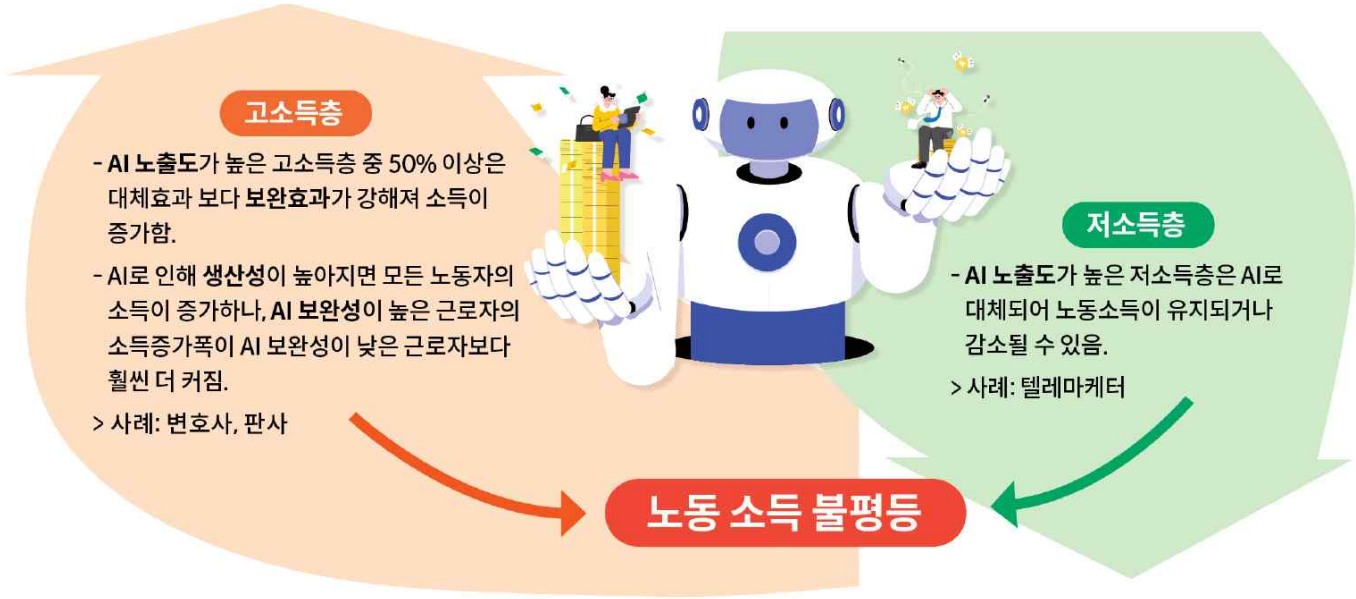
○ AI 노출도가 높더라도 대체율보다 보완성이 높다면 해당 업무를 보완하여 생산성이 높아지고, 소득이 증가되는 반면에 계층간 소득 격차를 발생시킬 수 있음.



* 자료: IMF. (2024). Gen-AI: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Future of 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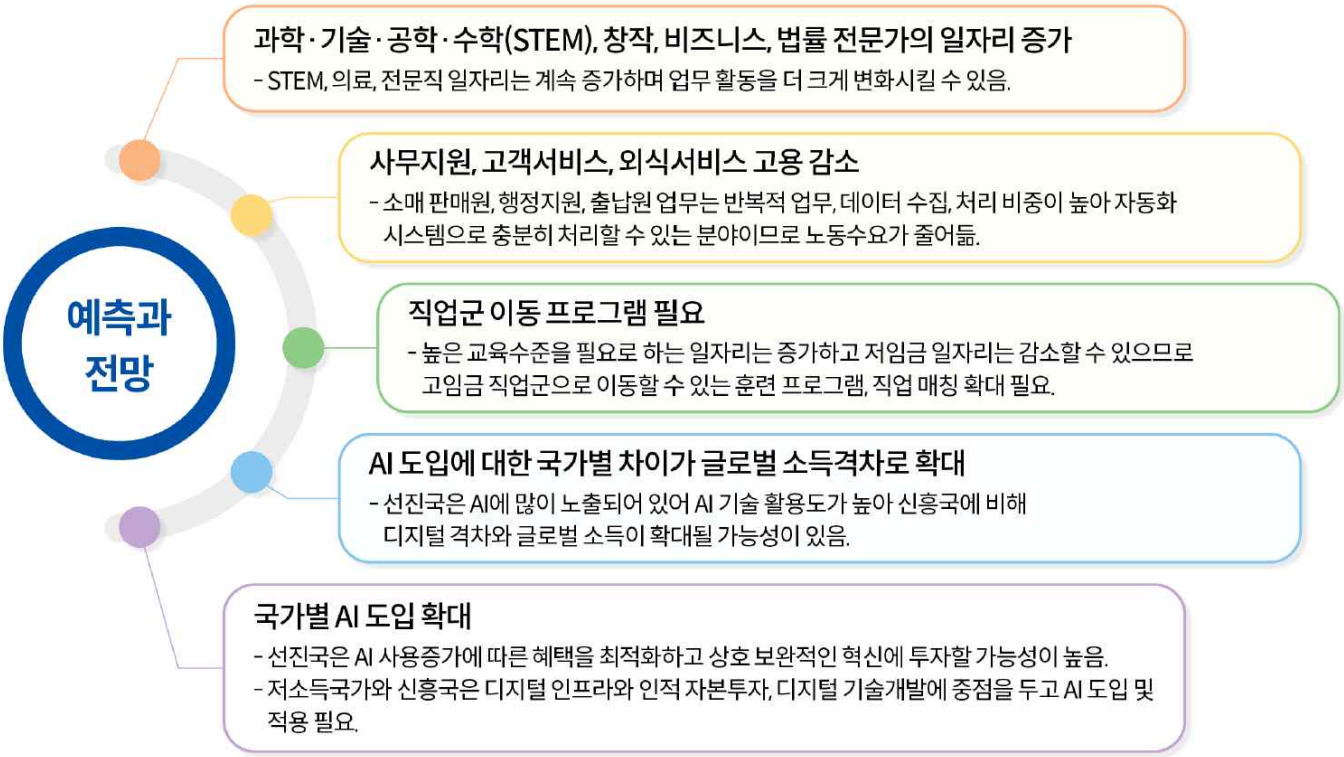
□ AI와 노동소득 불평등

○ AI의 노출도, 보완성, 생산성에 따라 소득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자료: IMF. (2024). Gen-AI: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Future of Work.

□ 예측과 전망


예측과 전망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창작, 비즈니스, 법률 전문가의 일자리 증가
- STEM, 의료, 전문직 일자리는 계속 증가하며 업무 활동을 더 크게 변화시킬 수 있음.
사무지원, 고객서비스, 외식서비스 고용 감소
- 소매 판매원, 행정지원, 출납원 업무는 반복적 업무, 데이터 수집, 처리 비중이 높아 자동화 시스템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노동수요가 줄어듦.
직업군 이동 프로그램 필요
- 높은 교육수준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는 증가하고 저임금 일자리는 감소할 수 있으므로 고임금 직업군으로 이동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 직업 매칭 확대 필요.
AI 도입에 대한 국가별 차이가 글로벌 소득격차로 확대
- 선진국은 AI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 AI 기술 활용도가 높아 신흥국에 비해 디지털 격차와 글로벌 소득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국가별 AI 도입 확대
- 선진국은 AI 사용증가에 따른 혜택을 최적화하고 상호 보완적인 혁신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음.
- 저소득국가와 신흥국은 디지털 인프라와 인적 자본투자, 디지털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AI 도입 및 적용 필요.

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 분석 사례

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 분석 사례

1.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의 개선사항

- 국회예산정책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년 예산안 분석 / 2023.10.) -

가. 현 황

○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어촌 규모와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제거점 육성, 낙후된 생활 인프라 개선 등 어촌을 도시 수준의 생활공간으로 혁신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517억 9,000만원이 증액된 96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어촌신활력증진	-	44,390	96,180	51,790	116.7
어촌신활력증진	-	42,500	85,460	42,960	101.1
어촌활성화지원	-	1,490	1,500	10	0.7
어촌투자촉진지원	-	400	400	-	-
어촌활력증진[1)]	-	-	8,820	8,820	순증

주: 1) 2023년도까지 어촌뉴딜300 사업의 내역사업(예산액: 5,880백만원)이었다가 2024년 예산안에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으로 이관됨

자료: 해양수산부

○ 동 사업은 2023년 신규사업으로 어촌신활력증진 내역사업 등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어촌활력증진 내역사업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어촌뉴딜300' 세부사업 하에 있다가 2024년도 예산안부터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2024년도 예산안은 88억 2,000만원이다.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예산안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세부 산출내역	금액
어촌신활력증진	(`23년 계속사업비 58,510백만원) • 유형1(139.1억×5개소×10%)=6,954백만원 • 유형2(69.9억×30개소×10%=20,971백만원 • 유형3(34.9억×30개소×30%) = 30,585백만원 (`24년 신규사업비 26,950백만원) • 유형1(150억×7개소×10%)=10,500백만원 • 유형2(70억×10개소×10%=7,000백만원 • 유형3(35억×18개소×15%)=9,450백만원	85,460
어촌활성화지원	• 선정평가비(서면, 현장), 자문단운영, 사업관리 정책지원, 사업 고도화 및 성과평가, 재생추진단 운영비 등	1,500
어촌투자촉진지원	•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 컨설팅, 타 사업 연계 지원, 어촌신활력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기초연구 지원 등	400
어촌활력증진	• 70억원 × 6개소 × 70% × 30%(3년차 연부율)	8,820
합 계		96,180

자료: 해양수산부

나. 분석의견

○ 2024년도 사업구조개편으로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내 편성된 어촌신활력증진 내역사업과 어촌활력증진 내역사업은 양 사업의 목적·주체·방식·수혜자 등이 유사하므로, 사업 간 차별성을 확보하여 2022회계연도 시정요구사항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사업인 어촌뉴딜300사업의 후속사업으로 2023년도부터 시작되었다. 기존 어촌뉴딜300 사업은 낙후된 어촌·어항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고유자원을 활용한 특화 개발을 지원하여 어촌의 재생을 도모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해양수산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어촌 300개소 선정을 마치고 2025년까지 사업지별 잔여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어촌활력증진 내역사업은 어촌뉴딜300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2022년부터 추진되었다.

○ 그런데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기존 어촌뉴딜300 세부사업에 있던 어촌활력증진 내역사업을 어촌신활력증진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이관하였다.

○ 어촌활력증진 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사업의 사업지 선정이 2022년 완료됨에 따라, 새로 추진하게 될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2022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어촌활력증진 사업의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로 시범사업이 끝나지 않아 본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도 해양수산부는 시범사업의 결과가 도출되기 전에 2023년부터 신규사업인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어촌활력증진 내역사업이 시범사업으로서 효용성이 퇴색된 측면이 있다.

○ 어촌활력증진 내역사업은 신규사업(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실시 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것으로, 어촌신활력증진 세부사업 내 어촌신활력증진 내역사업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두 내역사업은 어촌의 인프라·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한 어촌 인구 유입 증대를 통해 어촌의 활력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이 유사하고, 사업의 주체·방식·범위·수혜자 등에 있어서도 양 사업간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 특히 어촌신활력증진 내역사업의 '유형2'는 어촌활력증진 내역사업의 '어촌스테이션 조성'과 유사하다.

[어촌활력증진 및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비교]

구 분	어촌신활력증진 세부사업	
	어촌신활력증진 내역사업	어촌활력증진 내역사업
목적	생활서비스 등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신규·생활인구 증대	다양한 삶의 가치를 모색하는 관계인구의 유입을 촉진하여 어촌의 활력 제고
주체	지방자치단체 + 앵커조직, 민간투자자	지방자치단체 + 민간 앵커조직
규모	300개소('23~'30)	6개소('22~'25) *시범사업
예산(안)	2023년 예산(신규): 44,390백만원 2024년 예산안: 85,460백만원	2022년 예산(신규): 5,880백만원 2023년 예산: 5,880백만원 2024년 예산안: 8,820백만원
보조율	유형1 : 50% / 유형2, 유형3 : 70%	70%
사업범위	어항 중심의 생활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는 어촌생활권	
사업 구성	(유형1) 거점지역/생활서비스 거점, 창업인큐베이팅, 로컬센터 등 (유형2) 마을연계/마을간 생활서비스 연계, 지역 특화사업등 (유형3) 정주개선/안전시설, 정주여건 개선, 환경개선 등	·어촌스테이션 조성: 생활서비스 공급,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간마련 ·안전시설(빈집, 어항 등) 개보수 등
수혜자	지역주민, 청년·귀어촌인 등 신규유입 인력 등	지역주민, 청년·귀어촌인 등 신규유입 인력 등

자료: 해양수산부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어촌활력증진 사업과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간 차별성을 확보할 것'을 시정요구(제도개선)하기로 의결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동일한 내용으로 심사 중에 있다.

[어촌뉴딜300 사업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구 분	시정요구사항	유형
2022회계연도 결산	해양수산부는 '어촌활력증진' 사업과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간 차별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성과평가를 조속히 완료하여 그 평가 결과를 후속사업인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에 환류할 것(제도개선)	제도개선

자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보고서」(2023. 8.)

○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어촌활력증진 내역사업과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간 차별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서 구조개편을 통해 사업내용 등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두 내역사업(어촌신활력증진, 어촌활력증진)을 동일한 세부사업(어촌신활력증진)에 편성하였다. 이는 양 사업 간 차별성을 확보하도록 한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유사한 내용의 내역사업들을 동일 세부사업 하에 편성함으로써 유사·중복성이 심화된 측면이 있다.

○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어촌활력증진 사업과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간 기능 조정 등을 통해 차별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존 어촌뉴딜300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 및 시범사업인 어촌활력증진 사업의 결과를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에 조속히 환류하는 등 국회 시정요구사항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2. 청년인턴 운영사업 사업계획 보완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행정안전위원회 (2024년 예산안 분석 / 2023.10.) -

가. 현 황

○ 청년인턴 운영 사업은 유능한 청년들을 인턴으로 채용하여 청년들의 일 경험 확대 및 국정참여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과관리 및 행정 효율성 제고의 내역사업으로 신규 편성되었으며, 2024년도 예산안은 15억 2,000만원 규모이다.

[2024년도 청년인턴 운영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성과관리 및 행정효율성 제고	279	331	1,973	1,642	496.1
청년인턴 운영	-	-	1,520	1,520	순증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 청년인턴 사업은 이전 공공기관 일자리 사업에서 제기된 단기계약직의 직무능력향상 제약 등에 대한 대안이 미흡한 상황에서 총 선발인원을 설정하여 모집한 후 부서별로 할당하는 방식으로 인원을 배치하고 있으므로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청년인턴 운영사업은 2024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편성되었으나, 「청년인턴 활성화 계획」(관계부처 합동, 2023.01.17.)에 따라 금년도 5월부터 청년인턴을 운용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동 신규사업의 세부계획은 수립 중이며 금년도와 유사한 제도로 설계하되 올해 말 운용 경험을 반영하여 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 2023년도 운영계획에 근거하여 보면, 대상자는 최종 채용시험예정일 기준으로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세~34세)에 해당하는 자로서 특정 자격요건은 없으며 참여의지와 수행능력, 활동경력을 평가하여 채용한다. 청년인턴은 6개월 간(주40시간 근무)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월 229.5만원을 지원(4대보험 기관부담금 포함)한다.

[청년인턴 운영사업 개요]

▫ 규　　모: 117명
▫ 기　　간: 3개월~6개월(지원자가 원할 경우 단축 조정가능)
▫ 대　　상: 「청년기본법」상 청년에 해당하는 자(19세~34세)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감안, 사회적 약자는 채용 시 우대)
▫ 수　　당: 월 229.5만원(4대보험 기관부담금 포함, 최저임금 적용)
▫ 근로시간: 주 40시간(주5일, 일6시간)
▫ 수행업무: 배치 기관별 업무 특성을 반영, 실무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업무할당
▫ 2024년도 예산안: 15억 2,000만원
　- 인턴십 기본급 1,305,000천원(고용부담금 148백만원 별도)
　- 교육 행사 등 7,000천원
　- 청년인턴 정책현장·행사장 방문 여비(4회) 61,000천원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2023년도 부서별 수요인원과 실제 배치인원을 보면, 23개 부서·기관 중 13개 부서는 수요가 없음에도 인턴이 배치되었고 4개 부서는 수요보다 많은 인원이 배치된 것을 알 수 있다. 부서 수요와 배치 인원의 차이는 부서의 실수요와 지원자의 전공·관심분야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하에 인턴제도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선발할 인원을 정한 후 부서별로 할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데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2023년도 부서별 수요 및 배치인원]

(단위: 명)

부서		사전수요	배치계획	부서		사전수요	배치계획
본부	대변인실	3	3	본부	디지털정부국	0	2
	운영지원과	0	0		경찰국	0	0
	인사기획관	0	0		지방자치균형발전실	5	5
	의정관실	0	0		지방재정경제실	3	4
	감사담당관실	0	0		안전정책실	0	3
	기획조정실	8	8		재난협력실	0	2
	정부혁신조직실	0	3		재난관리실	2	3
소속기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	5		비상대비정책국	0	2
	국가기록원	10	10	소속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0	5
	정부청사관리본부	6	6		국가정보자원관리원	0	5
	대통령기록관	0	0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3	5
					국립재난안전연구원	7	7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 기업의 채용연계형 인턴제와 달리 정부기관은 단기체험형으로 인턴에게 주요 업무를 가르쳐줄 명분이 적은데 부서별로 필요한 인턴을 채용하여 활용하지 않고 할당하게 되면 더욱 단순 보조업무나 행사참여를 중심으로 운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청년인턴은 3개월~6개월간 채용되는데 초기 오리엔테이션과 나라 배움터 등을 활용한 기본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이해충돌방지법, 보고서 작성법 등) 기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활동 기간은 더욱 짧다. 또한 업무처리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행정전자서명(GPKI)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중요업무의 경우 보안상 책임이 뒤따르는 업무가 많아 현직자들이 업무를 위임하기에 제약이 있다.

○ 실제 행정안전부에서 청년 인턴들에게 부여할 주요 업무 예시를 보면 대부분 간담회 등 부처 행사의 준비 및 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으로, 선발될 117명의 전공과 관심 직종을 반영하고 공직 실무를 경험하는 데 적합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청년인턴 주요 업무 예시]

① 소관 정책 관련 연구자료, 해외사례 등 조사·정리, 통계 분석 지원 등
② 정부 주요 정책 관련 토론회·간담회 등 참석 및 결과 보고서 작성
③ 정책 현장 방문 및 의견수렴 과정 참여
④ 부처 내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 운영과 연계하여 부처 청년정책 수립 과정에서 의견제시 등 참여
⑤ 기관장 등 브리핑 참여·모니터링
⑥ 기타 회의·행사 준비과정 경험(참석자 확인, 회의장 세팅 등)

자료: 행정안전부

○ 이는 이전 공공기관 인턴, 정부 청년일자리 사업 운용 시에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이기도 하다. 당시 문헌들을 보면 인턴제도에 참여한 청년들은 기대했던 실무경험을 쌓지 못하는 데 대한 불만을 노정하고 수요가 없는데도 인턴을 할당받은 부서의 직원은 기존 업무에 인턴 관리 업무가 더해지면서 오히려 업무가 가중되는 것으로 인식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청년인턴제도 운영계획에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 장치나 대안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응하고자 양질의 일자리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재 범부처 합동으로 청년인턴을 위한 주요 업무를 발굴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차년도 사업 전 부서 수요를 재조사하고 지원자들의 전공·관심사와 정합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 그러나 신규사업 추진 시에는 반드시 실수요에 대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에 근거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의 규모가 결정되어야 한다. 정부 부처 일자리 사업의 경우 지원자의 수요와 이들에게 배정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할 일자리 규모와 소요예산이 산정되어야 정책사업이 의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청년인턴 사업은 총 일자리 규모부터 목표로 설정하고 가용한 재원 규모에 맞추어 대상별로 3-6개월의 기간 동안 일자리를 제공하는 계획안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 후 인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추진방식으로는 이전 유사 사업들의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제도의 근본 취지를 고려하여 부서별 실수요를 반영한 적정 규모의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지원자의 특성과 이를 연계하여 배치·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3.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의 기후대응기금을 통한 에어컨 설치 지원의 적절성 검토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년 예산안 분석 / 2023.10.) -

가. 현 황

○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저소득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단열·창호·보일러 및 냉방기기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 계획안은 전년대비 173억 5,800만원 증가한 1,083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4년도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2024 계획안(B)	증감	
		당초(A)	수정	계획현액		B-A	(B-A)/A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70,123	90,975	99,599	105,730	108,333	17,358	19.1

자료: 기획재정부

○ 동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가구 또는 지자체에서 추천한 일반 저소득가구나 아동·노인·장애인이용시설 등의 사회복지시설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 가구는 지자체나 희망복지지원단의 추천서를 받아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을 신청한다. 사업시행기관인 한국에너지재단에서는 신청 가구별 방문조사를 통한 현장실사 후 창호·단열·바닥공사 등의 시공을 하거나 노후보일러 교체와 같은 물품지원, 에어컨 등의 냉방기기 지원 등의 지원내용을 지원대상 가구와 협의 후 결정한다. 시공 및 물품 지원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동 사업의 가구당 최대 지원한도는 330만원이다.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2021년까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재원으로 수행되었으며, 2022년부터 기후대응기금 사업으로 이관하여 추진되고 있다.

○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에서는 2024년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가구 등 총 3.6만 가구와 250개 사회복지시설에

시공·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902억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냉방 지원은 1.8만 가구와 500개 사회복지시설에 에어컨 등의 냉방기기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계획안에 155억원을 편성하였다.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의 2024년도 계획안 산출 내역]

구분	집행 내용
시공·물품 지원	· 3.6만 가구 × 243만원 + 250개소 시설 × 11백만 = 90,230백만원
냉방지원	· 에어컨 등 냉방기기 지원 1.8만 가구 × 75만원 + 500개소 시설 × 4백만원 = 15,500백만원
에너지진단	· 사업효과 분석 및 진단시스템 개선, 저소득층 에너지 사용환경 실태조사 등 500백만원
사업운영비	· 현장점검, 콜센터 운영 등 1,023백만원
인건비	· 사업수행전담인력 20명 인건비 1,080백만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나. 분석의견

○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의 에어컨 설치를 지원하는 냉방지원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기후대응기금 사업으로 에어컨 설치 확대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의 2024년도 계획안은 에너지복지 측면에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구별 지원금액 및 지원 가구수를 확대하며 전년대비 173억원 증액된 1,083억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2022년 결산에서 기후대응기금 수입 부족으로 전년 대비 지원 가구수가 감소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수요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2022회계연도 결산에서는 계획현액 868억 9,800만원 중 106억 4,300만원을 불용하고, 61억 3,100만원이 이월되었다. 불용은 동 사업의 재원인 기후대응기금의 수입 부족으로 발생하였다. 2023년부터는 기후대응기금 수입 부족에 따른 에너지 복지 예산의 불용을 방지하기 위해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추진되고 있다.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의 2022~2023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연도	집행액				보조사업자 실집행액(2023년 8월 기준)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22	86,898	70,121	6,131	10,646	70,121	-	86,898	69,432	6,131	10,643
2023	99,599	60,975	-	-	60,975	6,131	105,730	39,345	-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의 주요 지원 내용은 냉방지원과 시공·물품지원으로 구분된다. 동 사업의 2024년도 계획안은 시공·물품지원이 전년대비 46억 8,700만원(5.5%) 증액되었으며, 냉방지원은 전년대비 41억 4,500만원(36.5%) 증액되어, 냉방지원 예산이 2023년에 비해 크게 증액 편성되었다.

[저소득층에너지효율향상 사업의 2024년도 계획안의 주요 내용별 현황]

(단위: 만호, 백만원, %)

구분		2023(A)	2024(B)	증감	
				B-A	(B-A)/A
시공·물품 지원	지원가구수	3.43	3.6	0.17	5.0
	예산	85,543	90,230	4,687	5.5
냉방 지원	지원가구수	1.51	1.8	0.29	19.2
	예산	11,355	15,500	4,145	36.5

주: 지원가구수는 저소득층가구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냉방 지원에서는 에어컨이 없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벽걸이 에어컨 등의 설치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오래된 에어컨을 고효율 에어컨으로 교체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중 시공·물품지원은 주택의 상태, 시공여건 등에 따라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시공이 불가하여 실제 지원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냉방지원의 경우 지원요건이 상대적으로 간소하고 선호도가 높아 많은 수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요 등을 반영하여 2024년도 계획안은 냉방지원 예산을 전년대비 36.5% 증액하여 편성하였다.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의 2022~2023년 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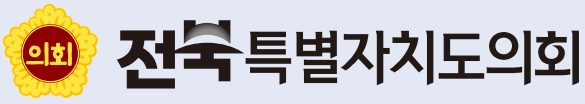
(단위: 가구, 개소)

연도	냉방지원 (저소득층 가구)			시공·물품지원					
				저소득층 가구			사회복지시설		
	신청	지원	지원율	신청	지원	지원율	신청	지원	지원율
2022	13,495	10,017	74.2	51,151	29,444	57.6	424	326	76.7
2023	16,417	15,140	진행중	46,043	34,385	진행중	259	190	진행중

주: 2023년는 8월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기후대응기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제69조에 따라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이며, 기후위기에 대응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을 주된 용도로 하고 있다. 냉방지원을 통한 저소득층가구에 대한 에어컨 지원은 에너지복지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을 주된 용도로 하는 기후대응기금으로 에어컨 신규 설치를 지원하는 것은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기후대응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에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냉방지원 중심으로 2024년도 계획안을 증액 편성한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의회


의회
전국특별자치도의회